

목 차

한글자막방송 현황과 속기사의 역할 / 1

정상덕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사)

법안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29

윤진훈 (방재시험연구원장,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속기의 필요성과 문화 / 49

안정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장)

한글속기 자격 및 교육훈련 현황 / 71

이경식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한글자막방송 현황과 속기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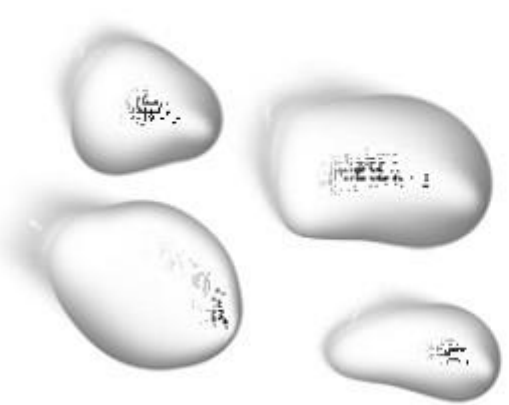
정상덕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사)



한글자막방송 현황과 속기사의 역할

제22회 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정상덕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사)



1 한글자막방송 현황

- 1-1 한글자막방송 연혁
- 1-2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 1-3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 1-4 장애인방송 제공 관련 기본 원칙
- 1-5 장애인방송 편성의 적용제의 프로그램

2 한글자막방송이란?

- 2-1 자막방송 개요
- 2-2 자막방송 유형
- 2-3 자막방송의 의미
- 2-4 자막방송 제작
- 2-5 자막방송 시스템
- 2-6 자막방송 속기사
- 2-7 한국의 자막방송 현황
- 2-8 방송사별 장애인방송 서비스 편성목표

3 속기사의 역할

- 3-1 속기자격제도의 시대적인 변화
- 3-2 실시간 교육 속기 지원
- 3-3 실시간 현장 속기 및 영화자막 제작 속기
- 3-4 속기 활용 분야 및 속기사의 역할





한글자막방송 현황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한글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문자방송을 실시하였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은 1998년, 자막방송용 송·수신 장치와 (주)한국스테노의 실시간자막방송시스템이 개발되면서 1999년부터 각 방송사의 협력으로 시작되었다.

- 1996년 CAS실시간 문자중계시스템 개발
- 1997년 PC 통신을 이용한 뉴스 문자 중계
- 1997년 대선주자 토론회 PC 통신 문자 중계
- 1998년 CAS 실시간자막방송시스템 개발
- 1998년 MBC 자막방송 시험방송 참여
- 1999년 2월 MBC 자막방송 시행
- 1999년 4월 KBS-1 자막방송 시행
- 1999년 4월 SBS 자막방송 시행
- 2000년 2월 EBS 자막방송 시행
- 2003년 4월 KBS-2 자막방송 시행
- 2004년 8월 KTV 자막방송 시행
- 2006년 7월 복지TV 자막방송 시행
- 2008년 3월 OBS 경인TV 자막방송 시행
- 2009년 6월 국회방송 자막방송 시행
- 2012년 1월 연합뉴스TV 자막방송 시행
- 2012년 3월 채널A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1월 YTN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1월 JTBC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2월 TV조선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5월 KBSN스포츠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3월 MBN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7월 롯데홈쇼핑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7월 CJ오쇼핑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7월 GS홈쇼핑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7월 현대홈쇼핑 자막방송 시행
- 2013년 12월 MBC스포츠플러스 자막방송 시행



제정 목적

- 장애인방송 서비스 제공 의무화를 통한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
- 장애인방송 제공 사업자 및 장르의 확대를 통한 수용자의 정보욕구 충족
- 장애인방송 편성목표 제시를 통한 장애인방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추진 경과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및 고시(안) 추진 계획 수립('10년 2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0년 3~10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초안 마련('10년 9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방송사 의견수렴('10년 10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10년 11월)
- 장애인방송 접근 관련 방송법 개정안 문방위 의결('11년 4월)
-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11년 5월)
- 장애인 방송접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11년 5월)
-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11년 6월)
- 방송법 개정 · 시행('11년 7월)



방송법

법률	시행령
<p>0 방송법 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p> <p>⑧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u>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개정방송법 본회의 의결안(‘11. 6.23)></p> <p>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금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0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p> <p>-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u>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u>재난방송프로그램</u>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u>방송프로그램</u> 3. 장애인의 방송시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u>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방송프로그램</u> 4. 기타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u>방송프로그램</u>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률	시행령
<p>○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p> <p>③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u>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u> 등 장애인 시청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⑤ (생략)</p> <p>⑥ - (생략) -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4조</p> <p>①, ②, ③, ④, (생략)</p> <p>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및 자막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p>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⑧ (생략)</p>

장애인방송 제공 관련 기본 원칙

-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장애인방송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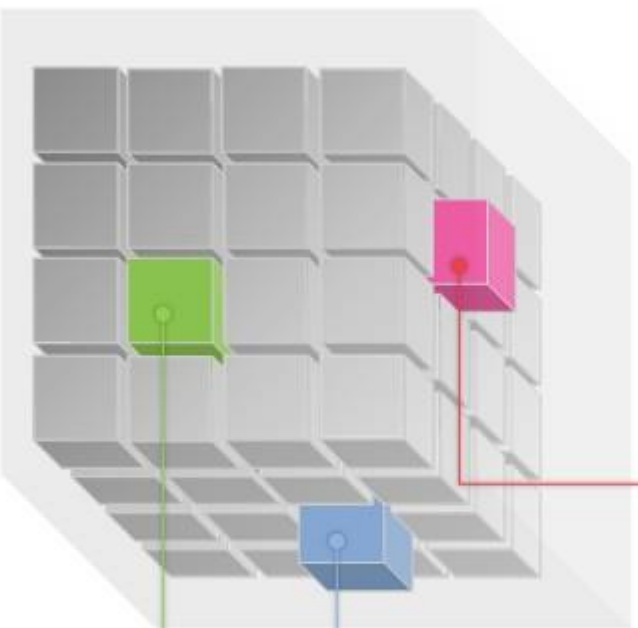
- **장애인방송의 성실 제공 의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신, 재송신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 **장애인방송의 유형 표시**

장애인방송물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장애인방송을 하고 있음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장애인 방송 편성 여부와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자막방송 : ㉞, C / 수화방송 : 수 / 화면해설방송 : 해, DV, D



적용제외 대상



- 기술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예) 발레 등 공연실황프로그램, 대부분이 악기 연주나 영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등
- 저작권 문제로 인해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예)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당해 프로그램에 장애인방송물 신호를 삽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현재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산정시 인정되는 적용제외 프로그램

- 자막방송. 수화방송 적용제외 프로그램
 - 기술적으로 자막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 대부분이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프로그램
 - 대부분이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프로그램
- 화면해설방송 : 적용제외 프로그램이 원칙적으로 없음

Tip

용어의 정의

- "장애인방송"이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통역방송을 말한다.
- "폐쇄자막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 "화면해설방송"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 "수화통역방송"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한글자막방송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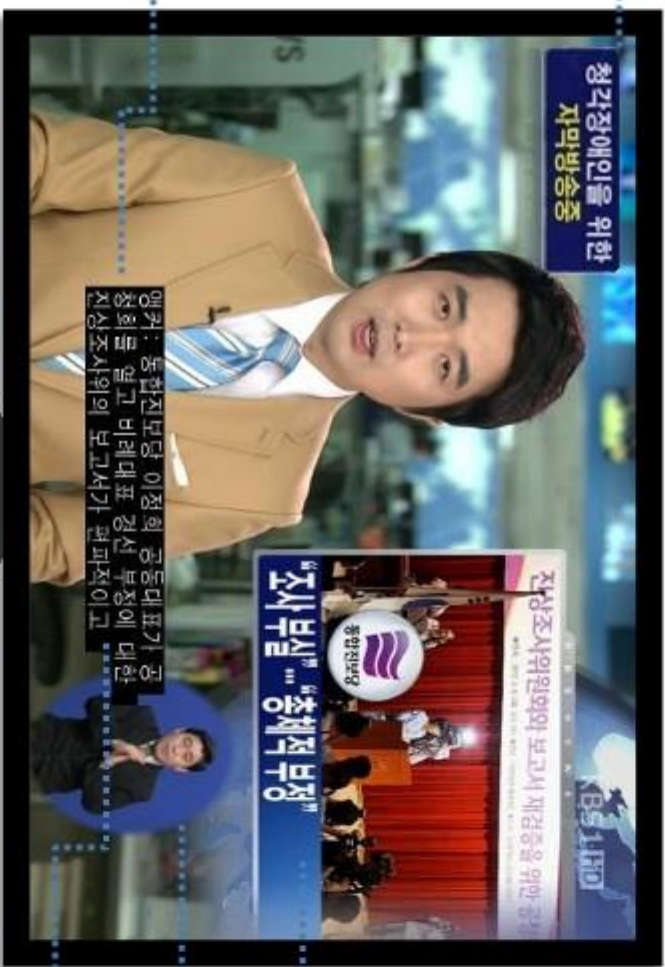


자막방송이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한 시청지원 서비스로 일반(오픈)자막과는 달리 **방송되는 모든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장애인방송 유형 표시

화면좌측상단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중'으로 알림 표시

※ 이러한 자막방송은 패쇄자막 (Closed Caption) 형태로 제공 되기 때문에 일반 TV수상기로는 볼 수 없으며, 디코더(자막방송 수신기)가 설치된 TV 또는 내장 된 TV를 통해 자막을 볼 수 있다.



→ 오픈자막 (Open Caption)

→ 수화통역

→ 클로즈드자막 (Closed Caption)

자막방송은 일반적으로 화면에 문자를 띄우는 방식에 따라 오픈자막(Open Caption)과 클로즈드자막(Closed Caption)으로 분류되며, 이 두방식은 또 온라인(On-Line) 서비스와 오프라인(Off-Line) 서비스로 분류된다.

1. 오픈자막(Open caption)

뉴스, 비디오, 영화 등의 화면 위에 글자를 넣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형태의 자막.

① 온라인(On-Line) 서비스

방송되는 모든 말들을 실시간으로 속기하여 방송화면과 함께 자막을 내보내는 방식.

자막방송은
화면에 문자를 띄우는
방식에 따라

오픈자막(Open caption)

폐쇄자막(Closed caption)

온라인(On-Line) 서비스

오프라인(Off-Line) 서비스

2. 클로즈드자막(Closed caption)

전파를 통해 TV주사선의 일부를 타고 들어가 디코더(decoder)를 통해 문자를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선택 할 수 있는 형태의 자막.

② 오프라인(Off-Line) 서비스

녹화된 테이프에 자막을 삽입하거나 사전에 자막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방송과 동시에 진행상황에 맞추어 그 내용을 내보내는 방식.

자막방송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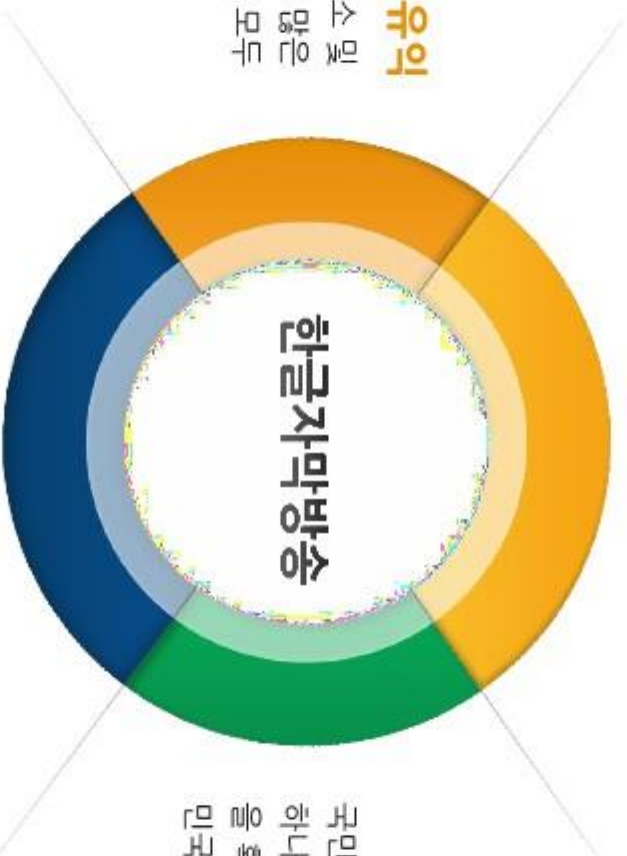
1.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정보화시대, 다양성의 시대에 청각장애인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자막방송은 방송되는 모든 내용을 가감 없이 실시간 자막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

2. 국가 위상 제고

국민 복지 수준은 국가의 선진화 판단 기준 중의 하나로, 복지 수준 평가의 주요 지표인 자막방송을 확대함으로써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익

자막방송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및 정숙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TV시청에도 많은 도움을 주며 이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익한 역할을 한다.



3. 어린이 및 외국인 한글 교육

최근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글자막방송은 우리 언어를 세계인에게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글을 공부하는 어린이에게도 매우 유용하다.

자막방송의 특징

자막방송은

뉴스, 속보, 중대성명, 재난방송 등은 물론 지식기반 정보화시대 다양한 정보가 담긴 시사·정보프로그램 등과 같은 방송프로그램들에 그 가치를 살려 실시간 폴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제공

방송프로그램의 본래 의미가 희석되거나 왜곡되는 등의 문제를 미리 예방



폴텍스트 제공

자막방송의 최대 소비자인 청각장애인에게 그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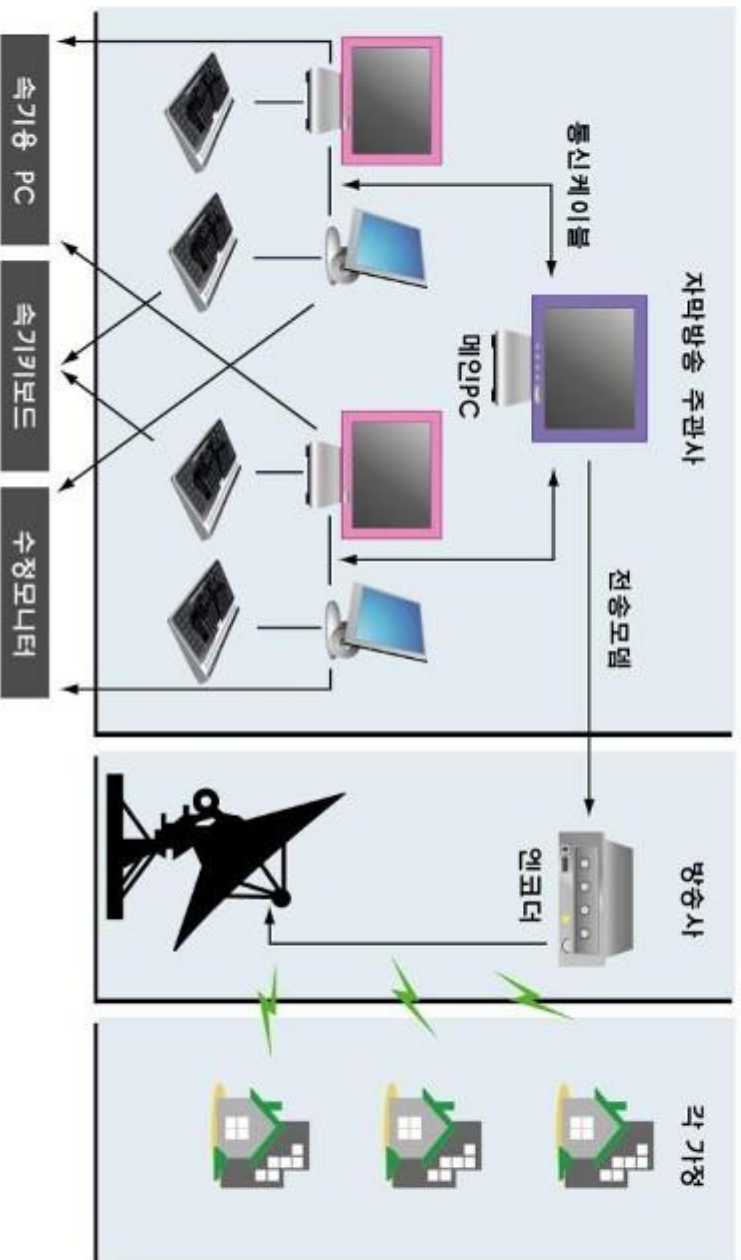
사전제작 자막방송은 녹화된 테이프에 자막을 삽입하거나 사전에 방송 대본 등의 자막 데이터를 제작한 후 방송 편성시간에 방송화면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자막을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간 자막방송은 국가공인 1급 속기 자격을 취득한 속기사가 자막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되는 모든 음성 및 음향을 실시간으로 자막화 하여 방송화면과 함께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자막방송시스템은 하나의 컴퓨터에 속기 기계 2대를 연결할 수 있으며 속기와 동시에 수정이 가능하다. 속기사 4명이 한 조를 이루어 자막방송시스템을 통해 2명은 진행 되는 시그널을 보며 교대로 속기하고 다른 2명은 교정 후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막방송 흐름도





응시 자격 요건

필요시 수시모집하고 있으며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실기테스트를 거쳐 최종 연수생을 선발한다.

연수 내용

자막방송 실무에 필요한 자막방송시스템의 이해와 실무교육으로 진행되며 방송 약자 및 기호, 한글 맞춤법 속지, 방송장르, 방송프로그램별 시스템 연습 등 단계별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기 테스트

일반연수와 자막방송연수 과정을 모두 수료하게 되면 자막방송 실무에 투입되기 전 국가기술자격시험 1급(320자) 이상 수준의 실기 테스트를 거쳐 반드시 합격하여야만 실무에 투입되게 된다.

자막방송 투입

일반연수와 자막방송연수 수료 후 실기테스트에 합격한 자에 한해 자막방송 실무에 투입되며, 자막방송 속기사에 대한 수요 발생시 연수 중이라도 실기 테스트를 거쳐 성적 우수자의 경우 우선 투입되기도 한다.



자막방송 속기사 채용안내

채용(응시)요건

- 채용시기
 - 수시모집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자격제한 : 국가기술자격증 한글 속기 2급이상 취득자 중 자막방송 연수 수료자
-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실기시험 필수

근무조건

- 근무시간
 - 방송사별 자막방송 시간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 보수수준
 - 사내 인사관계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정규직(연봉제)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기숙사 지원
 - 지원대상 : 거주지가 지방인 경우와 방송사별 근무시간 등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
- 교통비 지원
 - 지급기준 : 방송 종료 시간 기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경우



자막방송은 음성인 문자로 전환되는 딜레이타임(delay time)과 정확도로 그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막방송은 **딜레이타임(delay time) 약2~4초, 정확도 98%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막방송을 시작하였으나 방송내용의 실시간 자막화가 쉽지 않은 일본 문자의 특성상 양질의 자막방송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우수한 관련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막방송 실시 초기부터 미국, 유럽 등과 같은 선진적 실시간 자막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98%



방송사별 자막방송 실시 비율

2014. 5. 기준

방송사	자막방송 비율	방송사	자막방송 비율
 KBS1	100%	 KBSN Sports	약 45%
 KBS2	100%	 MBC Sports	약 45%
 MBC	100%	 LOTTE 롯데온쇼핑	약 45%
 SBS	100%	 O SHOPPING	약 45%
 EBS	100%	 GS SHOP	약 45%
 KTV 국민방송	약 50%	 현대홈쇼핑	약 45%
 WBC 복지TV	100%	 JTBC 미디어텍	약 75%
 OBS	약 40%	 MBN	약 50%
 국회방송	약 45%	 TV조선	약 50%
 연합뉴스TV	약 45%	 CHANNEL A	약 50%
 YTN	약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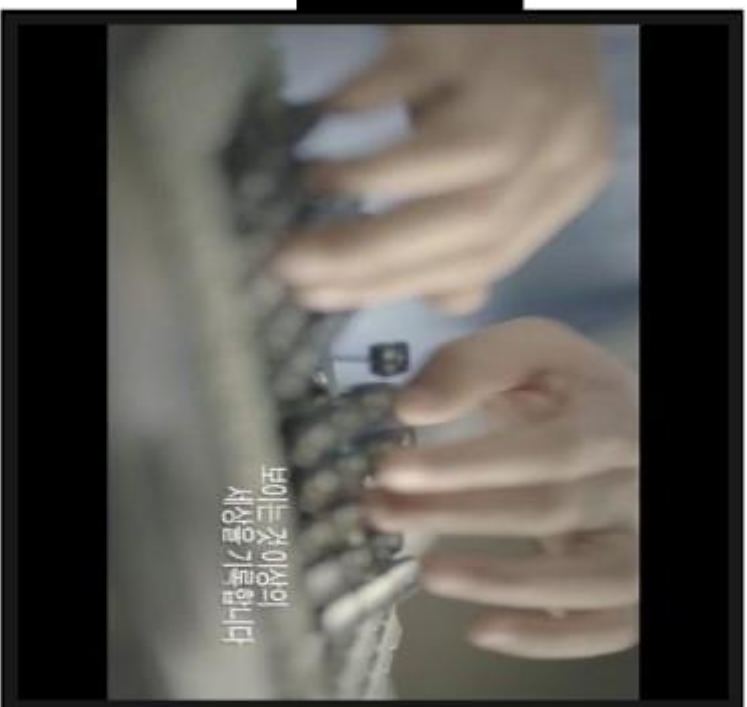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서비스 편성목표

사업자 구분	대상 사업자	유예 기간	기산 시점	최종 편성률 목표 (%)			달성시점
				지역	화면 해상	수화	
지상파	중앙 지상파	×	2012	100	10	5	2013 (화면해설: 2014)
	지역 지상파	×	2012	100	10	5	2015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	위성방송 (직시채널대상)	1년	2013	70	7	4	2016
	SO (지역채널대상)	1년	2013	70	7	4	2016
유료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보도·종편 PP	1년	2013	100	10	5	2016
	일반 PP	1년	2013	70	5	3	2016

※ 지상파를 제외한 사업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속기사의 역할



속기자격제도의 시대적인 변화

속기 국가검정제도의 변화

한글자막방송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리얼타임 속기 방식은 속기 수요처의 요구에 한걸음 다가서는 한편 속기가 발전하는 모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속기 국가검정제도의 변화에서도 알 수가 있다.



수필속기



5분 속기 후 60분 변문
연설체, 논설체

타지속기



5분 속기 후 60분 변문
연설체, 논설체

컴퓨터속기



5분 속기 후 20분 수정 편집
연설체, 논설체

실시간속기



5분 속기 후 즉시 제출
연설체, 논설체



교육속기사 수업 지원

강의실 등에서 진행 되는 강의내용을 속기사가 현장에서 실시간 속기함과 동시에 스크린 또는 노트북 화면을 통해 장애학생에게 자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실시간 인터넷 강의 자막

사이버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 실시간 강의 또는 특강 등을 속기사가 실시간 속기하여 자막과 함께 방송하는 것으로 원거리에서 수업에 직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 용이하다.



교육속기사



자막 지원



실시간 원격 교육 자막

실시간자막속기지원시스템이 설치된 원격지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 교실과 연결, 강의내용을 속기사가 청취함과 동시에 속기하여 속기된 데이터를 수업 중인 교실로 실시간 전송, 교실의 전자 칠판을 통해 자막이 출력되어 청각장애 학생의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시간 인터넷 자막

영상콘텐츠 자막 입력

CAS미디어를 통해 속기사가 교육영상 콘텐츠의 내용을 보며 신속, 정확하게 속기하여 강사의 강의내용과 자막이 일치하도록 교육영상 콘텐츠에 자막을 입력 제공하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자막 입력





[2012 Asia-Pacific DPI Assembly]



[2013 액티브에이징코리아 국제심포지엄]



[경희대학교 석학 초청 강연]



국제회의, 대형행사,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학교 입학식, 졸업식 등의 현장에서 행사의 진행 상황과 그 내용을 실시간 속기함과 동시에 스크린을 통해 자막으로 볼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일 저장 및 프린트가 가능해 현장에서 바로 속기록을 받아 볼 수 있다.

속기사의 역할

영화 자막 제작



청각장애인, 난청인 등을 위해 자막이 없는 우리말 영화의 내용을 속기사가 속기하여 연기자의 음성과 자막이 일치하도록 한글 자막을 입혀 제공하는 것이다.

13th POFF 공식포스터
2013.09.23~09.27



- 법원 | 검찰 | 경찰 등
사건관계자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 하는 正義速記

-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등
신속 ·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經營速記



- 국회 | 의회 | 행정부처 등
千年之大計를 위한
記錄保國 速記

- TV방송 | 대학교 | 다문화
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百年之大計 福祉速記

經營速記

제22회 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법안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 법률안 검토기법

윤진훈 (방재시험연구원장,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I. 법률 현황

○ 사람(공무원): 970,690명

국 가	632,296	65.4%
지 방	338,394	34.6%
합 계	970,690	100%

○ 돈(예산): 349조원

구 분	수 량
헌법	1
법률	1,328
대통령령	1,522
총리령	69
부령	1,117
기타(국회규칙 등)	329
합계	4,366

○ 권한(법령): 법률 1,328 ÷ 300인=4.4개

II. 입법과정의 기능

1. 민의수렴 기능
2. 갈등해결과 통합 기능
3.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4.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

Ⅲ. 법안의 검토기준

1. 입법의 필요성

- 정책입안의 필요성, 법률형식의 필요성, 시기적 필요성
- 규범화의 필요성: 강제성, 실효성, 타당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

- 법의 이념 구현
- 사익과 공익의 조화
- 공권력 행사의 공정성
-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소급입법 문제
-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화

3. 입법내용의 조화성

- 국법체계의 통일성
- 모순·저촉과 중복의 방지
- 원칙과 특례의 조화
- 모순·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 소관사항의 원칙, 상위법령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4.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 표현의 명확성
- 알기 쉬운 법문

5. 조문배열의 원칙

- 순서의 원칙
- 경제의 원칙
- 배열 기준

IV. 위헌법률 검토기준

1.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 제도·통치기구의 본질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함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위임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할 것
3. 명확성의 원칙: 자의적인 법집행 예방,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4. 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화, 법익의 균형성
5. 평등의 원칙: 부당한 차별 금지
6. 신뢰보호의 원칙: 신법으로 보호되는 공익과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소급입법 허용 여부 결정
7.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의 근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8. 최소보장의 원칙(과소보호금지 원칙):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9. 체계정당성의 원리: 같은 법규범, 다른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서로 모순·저촉 금지
10.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법률 없이는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 대표자 없이 과세할 수 없다.

V.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전략

1. 법안 심사는 정책심사
2. 제정·개정 사유의 타당성(비용의 최소화, 경제성)
3. 법안의 예산수반 검토
4. 국민의 경제적·절차적 부담
5. 국민·지역 간의 혜택(부담)의 형평성
6. 법안 심사 시 검토할 부분
7.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마찰
8. 자료수집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9. 공청회의 필요성 검토
10. 벤치마킹(benchmarking)기법 활용
11. 행정부 담당 공무원의 의견 참고
12. 반대편에서 분석하기
13. 입법예고 시 제시된 국민·단체들의 의견
14. 집행자의 재량범위
15. 적용범위의 적정성
16. 단서조항의 필요성
17. 경과조치의 적정성
18. 시행일의 적용시점
19. 성별영향분석평가

VI. 법안 검토보고서 작성 10계명

1. 법안 전문을 읽어보고 개정조문을 보라.
2. 법 제정·개정의 기대효과가 과장되어 있는지를 보라.
3. 외국의 입법 예를 살펴보라.

4.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라.
5. 각계 의견과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라.
6. 실제 집행기관(지자체, 공사, 공단 등)의 의견을 들어보라.
7. 법을 시행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보라.
8. 법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인가를 보라.
9. 국민의 경제적 절차적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라.
10. 문제없는 법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충분한 설명 자료가 되게 작성하라.

VI. 법률안 검토전략

1. 법률안 검토는 정책심사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1조부터 부칙까지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정책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이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률의 조문을 수정·추가·삭제 등 변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안을 검토할 때 우선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률안의 조문은 정책을 일정한 법률용어로 표현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법률안 검토 시 법률안의 형식적인 체계나 자구·용법 등 관례적인 약속도 검토해야겠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부차적이다.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법률 내용의 주요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수여하는 법률안을 검토한다면 먼저 이 법률안의 주요사항, 즉 주요정책 사항인 ‘대상자 범위’, ‘대상자 선정방법’, ‘권리·의무 부여 문제’, ‘취소사유’ 등의 타당성이나 범위의 적

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안에 규정되어 있는 정책을 변경하거나 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한다는 것은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2. 제정·개정 사유의 타당성(비용의 최소화, 경제성)

법률안의 맨 앞에는 반드시 그 법률을 제정·개정하게 된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그렇다면, 의원이나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그 이유가 정말 타당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률의 제·개정 사유에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법률안을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을 제정·개정하려는데 전제가 잘못됐다면, 이러한 전제 하에 작성된 법률안은 차라리 부결시키거나, 원안을 폐기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취사선택하여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대안을 발의·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료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간되는 각종 책자나 홍보지, 각종 고지서 이면에 광고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수입이 극히 미미하고, 정책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 법률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주차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하여 승용차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경우 공공주차장의 이용요금을 인상해 봐야 국민의 부담만 증가하고 정책적 효과, 즉 승용차 이용 억제효과가 없다면 법률의 통과 여부나 정책의 내용, 즉 법률내용의 수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법률안의 예산수반 검토

법률은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법률에 따라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단순히 조직을 변경하는 등의 법

률은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지 않지만 (조직을 확대하는 법률은 예산이 수반됨), 문예회관이라든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법률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법률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재원의 종류는 무엇인가? (전액 자체부담 또는 국고, 시·도 보조 여부), 재원조달 계획은 적정한가? 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우선순위 검토)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예산의 조달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 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뒤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을 부결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국민의 경제적·절차적 부담

시행령이나 조례에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담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 법률에서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시행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징수되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인상이나, 지방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준 경우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를 인상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전문위원이 법률의 개정·제정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부담까지도 체크하여야 한다.

법률의 제·개정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면,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민들의 경제적·절차적 부담증가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판단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국민의 부담, 즉 희생에 의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 국민 부담

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가? 대안은 없는가? 국민이 부담의 정도를 충분히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농업의 구조개선과 소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더욱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경영체 신규등록·변경등록과 직불금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발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의 신청서식과 집행절차가 일원화되어 농업인의 절차적 부담을 해소시킨 것이다.

5. 국민·지역 간의 혜택(부담)의 형평성

법률은 전체 국민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국민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어 혜택이나 부담이 불공평해질 수도 있다.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유치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과 불균일과세 법률은 지방세를 감면받는 대상(지역)과 그렇지 않은 대상 간에 혜택의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대학을 다니다 입대한 군 복무자에게 학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자. 하지만 폐지된 군 가산점제와 비슷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 학점 인증제'의 핵심은 모든 군 복무자에게 복무기간에 준하는 일정한 대학 학점이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재학 중 입대한 장병에게 교양과 일반 선택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적용 대상은 현역 복무 병사와 간부, 상근 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이다.

온라인 수강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한 1학기 정도 일찍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복무 중에 있는 대학생의 경력 단절을 줄여줌으로써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군 생활을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기업체에 근무하다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경력으로 전환하고, 중·고졸 출신으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경우 평생학습계좌에 적립해 나중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일단, 군 가산점제 논란 당시와 유사한, 형평성 논란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것이다. 또 호봉이나 경력 인정을 민간 기업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대학생 병사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6. 법률안 검토 시 검토할 부분

법률안 검토방법과 관련하여 의원들이나 전문위원들로부터 받는 질문의 대부분도 ‘도대체 법률안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이냐?’ 이다.

우선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체크하라는 것이다. 물론, 법률안 심사 시 ① 법률유보의 원칙, ②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③ 명확성의 원칙, ④ 과잉금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⑥ 신뢰보호의 원칙, ⑦ 적법절차의 원칙, ⑧ 최소보장의 원칙, ⑨ 체계정당성의 원리, ⑩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⑪ 법률의 체계나 용어의 통일 등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이미 정부나 법제실에서 법률안을 입안하여 제출할 때 철저히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문위원도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이 법률안을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부분, 즉 착안사항이 따로 있다.

7. 법률 시행 시 예상되는 마찰

법률은 시행을 전제로 제정되고 개정된다. 그렇다면, 법률의 시행단계에서 국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과정에 마찰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거나, 지역 간·국민 간에 혜택 또는 부담이 불공평하거나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은 민원으로 야기되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시행 상에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는 결국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얻으려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법률안 검토 시 시행 상에 예상되는 마찰이 없겠는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8. 자료수집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법률안은 정책을 일정한 법률용어로 조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경우 먼저 정책을 검토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법률이 의도하고 있는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 시행상의 마찰이나 특정 지역 또는 국민에게 특혜의 소지는 없는가? 정책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률안 검토 시에는 자료수집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고 할 때 중소기업 종사자나 이에 관한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게 되면 이 정책, 즉 법률안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좀 더 현실성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자료수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검토하려는 법률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법률을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법률안 검토의 착안사항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9. 공청회의 필요성 검토

국회에서의 공청회는 심사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공청회가 필요하다.

예컨대, 건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할 때에 관내에 있는 건축사나 건축전공 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주민세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 시 국민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안 심사 시 공청회 개최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법률 시행 시에 ① 국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거나 ② 국민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경우, 입법예고 시 접수된 ③ 국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경우, ④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나 관련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벤치마킹(benchmarking)기법 활용

벤치마킹(benchmarking) 기법은 경영기법으로서 초우량 기업이 되기 위해 최고수준의 기업과 자기 기업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를 배우는 것을 혁신의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과 품질, 애프터서비스 등을 경쟁업체 또는 선진기업의 수준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격차 극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 기법은 법률안을 입안하거나 검토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법률안을 검토하면서 아무런 비교 대상도 없이 검토한다면 무슨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고, 무엇이 필요 없는 내용인지, 조문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명확한가 등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검토대상 법률안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법률 5~6종을 수집하여 비교하게 되면 차이가 무엇인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수정할 것은 어느 것인지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11. 집행기관 담당 공무원의 의견 참고

법률은 조문규정대로 시행되고 효과를 거두어야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된다. 법률안을 검토할 때에는 나름대로 법률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예측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나 기대가 실제 현장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법률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문규정 등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안은 실제 법률을 집행할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은 일선에서 국민과 접촉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실무 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문규정이나 문제점, 보완할 사항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법률안'의 적용대상을 전체 소득 중 농업소득이 60% 이상인 농업인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실제로 농업소득의 60%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업인 대다수는 구체적으로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판단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검토과정에서는 법률의 적용대상 중 농업소득 기준의 삭제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12. 반대편에서 분석하기

법률안이 입안되어 국회에 제출될 때는 이미 정책적인 효과나 그 필요성이 검토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의결·시행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 검토과정에서는 해당 법률안이 부결된다면 해당 국민이나 자치단체에 미치는 문제나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반대쪽에서 뒤집어 보면,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다른 측

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유치 또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관련 개정 법률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이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정부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고 강조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법률안을 부결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법률안을 뒤집어 보게 되면,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균형 있게 비교·판단할 수 있다.

13. 입법예고 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안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 중에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여 완전한 법률안으로 작성·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입법예고 시 국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참고하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특정 국민이나 지역, 일정한 집단이나 단체가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없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안 입안 시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무엇인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면 왜 수렴이 안 됐는가? 등 그 사유를 파악하고, 국회에서 수렴할 의견이 없는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인 병원이 영리 목적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해서 반발에 부딪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 병원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대신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 영리 목적 자회사를 허용하면 사실상 병원이 영리 병원이 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아 의료기기 임대, 의약품 유통 자회사를 설립하고 병원이 자회사의 의료기기를 임대하거나 자회사의 약품을 공

급받는다 고 치자. 병원은 자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환자들에게 자회사 의료 기기를 이용한 진료를 권하거나 이왕이면 자회사 약품을 처방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등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환자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도 비급여 진료 권유 등을 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들의 영리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그만큼 환자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예고 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14. 시행령의 재량범위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이나 장관이 제정하는 시행령·부령이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중요한 정책방향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 위임하는 사항이 과다한 경우 법률은 소위 빈 껍데기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 어느 범위까지 법률에 정할 것이냐는 순전히 입법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입법권자가 정할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해야 좋은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임사항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사항이거나 시행령에 정하면 행정부의 재량사항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일정한 원칙이나 한계를 법률에서 규정해 주어야 한다. 법률에서 재량범위가 크게 되면 그만큼 법률의 제·개정 효과도 낮아진다.

예를 들어, 조문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등’ ‘필요한 경우’ 등은 법률 시행 시에 시행령에 판단의 재량을 주는 것이다.

15. 적용범위의 적정성

법률에는 적용범위가 있다. 법률의 적용대상을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범위까지로 하는 것인가를 의미한다. 적용범위는 국민, 지역, 단체의 범위와 특정사안(폐공,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적용범위는 전체 국민이나 지역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 대상을 적용범위로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안 검토 시에는 적용범위를 검토하여 범위의 과대 또는 과소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적용범위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되면 국민, 지역 또는 단체로부터 불만이 발생하고 효과성이 낮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농업인 지원 법률안’을 심사한다고 하자. 이 경우 농업인 중 고령농업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적용범위가 좁으면 국민 또는 노인 단체들로부터 불만이 발생하고 시행 효과가 낮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적용범위가 넓으면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필요하고,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된다.

16. 단서조항의 필요성

단서조항은 조문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법률적용의 적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둔다. 그런데 이 단서조항도 잘못 규정하면 앞의 규정 즉, 본문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재량범위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서조항이 없으므로써 조문이 많아지거나 복잡하게 될 경우에 입법경제상 최소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유가 불합리하면 형평성과 특혜시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단서조항을 통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발생할 문제는 없는가, 적용 예외대상 범위가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의 심의를 위

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을 심사한다고 하자. 그런데 심사대상에서 국립 또는 독립 연구기관에 맡기는 용역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이런 용역발주를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적용 예외로 하여 문제는 없는가, 예외대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법률이 유명무실한 것은 없는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적용 예외대상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단서규정을 집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서를 남발하게 되면 법률적용의 일반성이 약화되고, 특정 대상을 적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된다.

17. 경과조치의 적정성

경과조치는 기존의 법률과는 다른 새로운 법률(개정이나 폐지·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권리 내지 지위를 존중·보호하고 사회적 혼란 발생을 방지하며 시행상의 조정 등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위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경과조치가 규정됨으로써 기존의 권리나 이익이 계속 보호받게 되는 경우, 특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과조치가 필요함에도 규정하지 않아 특정한 권리나 지위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비교적 모범적인 법률이 있는 경우 이 법률의 내용이나 표현방법, 문구 등을 모방, 즉 벤치마킹하면 법률안 검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동종의 기존 법률이 있다는 것은 일단 시행 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기존의 법률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정책사항이다. 그 다음에는 법률규정의 체계나 용어의 표현방법 등도 비교하여 좋은 것을 채택할 수가 있다.

다른 법률의 정책내용이나 좋은 표현을 채택한다는 것은 검토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의미한다.

18. 시행일의 적용시점

시행일은 법률의 부칙에 규정하는데 그 법률의 시행시기, 즉 적용시점을 나타낸다.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할 때에는 ① 국민이 그 법률을 알 수 있는 기간을 주고, ②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시행일이 「 공포된 날부터」로 되어 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법률의 공포는 일반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게 되는데 국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관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법률의 제·개정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시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물론, 법률 중에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라든가, 조직에 관한 법률 등은 국민과의 관계가 크지 않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이 국민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면 적어도 국민이 알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무원의 위치가 아닌 국민의 위치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란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정책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법률·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이 해당된다.

특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 격차가 크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령 개선사례로는 ① ‘출가녀’ 개념 및 합리적 근거 없는 결혼한 여자에 대한 구분취급, 친인척 범위에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었던 조항에서 차별적 개념의 삭제 및 성평등한 조항으로 개선(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성인지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등이 있다.

계획에 대한 개선사례로는 ① 여성의 보행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 및 도시공간에 범죄 예방 설계를 적용하고 아파트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을 교통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② 영유아 동반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갖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용 좌석에 임신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석’을 지정·운영하도록 개선된 “양주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이 있다.

사업에 대한 개선사례로는 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한 “성과평가체계 개편”(국세청), ②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법률안” 개정 시 남녀차별적 업무 분장을 개선하고 여성 하의 규정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하여 반영토록 한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운영 사업”(소방방재청) 등이 있다.

제22회 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속기의 필요성과 문화

안정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장)

속기의 필요성과 문화

안정근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속기협회 회장)

1. 속기의 필요성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다. 모든 것이 신속과 정확을 요한다. 정보수집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최선의 수단인 문자화된 기록 역시 마찬가지다. 나날이 복잡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에서 즉석에서 발언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기록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즉석에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혹자는 녹음기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 녹음이 청각적인 면에서는 속기록보다 나올 수 있지만 그 외에 분위기 묘사 등의 표기 면에서는 속기록을 당할 수 없다. 결국 녹음을 하여 다시 들으려면 그만큼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더구나 문자로 풀어 쓰려면 결국엔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간혹 장시간 녹음을 할 경우 정전이나 배터리 소모, 고장이나 소음 등으로 인한 녹음의 단절 및 정확치 못한 녹음일 경우는 녹취가 불가능하다. 또 영구 보존해야 할 녹음테이프는 그 보관이 어려우며 장기간 보관할 시 테이프의 손상을 가져온다. 물론 근래에는 디지털화하여 보관하지만 그의 수명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녹음내용을 영구 보존키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문자화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속기술이다.

가끔 비디오 촬영 등 영상으로 보존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다. 물론 시청각 측면에서는 속기록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장면이나 발언내용을 촬영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열람시키거나 영구보존을 위해서는 이 역시 문자화해야 하는데 결국엔 속기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생산적인 기록이 어렵다.

시대가 급속도로 발전·변천하여 발생한 많은 문명의 이기 속에, 근자에는

‘음성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전자제품에는 음성을 인식하여 일부 명령어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성인식을 이용한 기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에서는 ETRI/전자통신연구원과 3년여 인공지능 음성인식과 관련 하여 공동 연구한 바 있으나 끝내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물론 아주 낮은 속도로 아무런 잡음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발언 내지는 책을 낭독했을 시에 일정부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발언에서 동시에 말이 겹칠 때에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바, 하물며 국회 각 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의원들이 아우성치는 상황을 기록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소리나는 대로 기록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연극이나 영화대본처럼 편집 역시 불가하고, 각종 부호 역시 표현이 안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한 컴퓨터공학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을 속기에 접목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며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의 인류 마지막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설사 먼 훗날 음성인식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해도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의 속기와 마지막 검수·편집 등은 결국 인간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 등등을 감안할 때 속기록은 기록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즉 속기사는 발언내용을 녹음기처럼 빠짐없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비디오나 사진으로 촬영할 수 없는 부분과 분위기까지 속기록에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언어가 있고 토론이 있고 회의가 있는 곳에 속기사는 필수적이다. 특히 국정과 도정과 시정을 논하는 의회나 법원 등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국회법은 ‘회의록은 반드시 속기법에 의해 기재해야한다’고 강제하였다. 이것은 속기록이 회의진행 상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기록한 사초이기 때문이다.

2. 속기사와 사관

오랜 기간 지구상에 살아 온 인간들은 수많은 흔적들을 남겼다. 이것을 현

재의 입장에서 재생하고 해석하는 것이 역사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역사는 문자로 기록을 남긴 때부터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 이전의 시대는 선사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사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인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부분은 고고학이나 인류학, 민속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맡기자. *(아마도 이들 역사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연구는 어렵기가 매우 한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앞선 시대를 살아왔든 혹은 동시대를 살고 있든, 사람이라는 존재로 있는 이상은 모두가 역사의 현장이고 훗날 평가의 한 지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과 과오는, 물론 그것이 시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역사를 이룰 것인가! 여기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곧 기록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는 기록을 통하여 우리들 민초의 삶이 조명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초들 또한, 마치 우리 선조들이 ‘하늘(이 하늘은 결국은 역사라고 할 수 있다)에 부끄럽지 않은가’ 라고 되물으며 자신의 삶을 가다듬고 실행했듯이, 이러한 역사의식이 있을 때만이 좀 더 사회·정치적 존재로서의 본질적 의미를 더욱 잘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역사의 평가, 국민의 평가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역사란 인간이 살아온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를 우리는 사관이라 칭한다.

중국에서는 天子(주권자-황제의 별칭)의 좌우에 사관을 두어 좌사는 천자의 행동을, 우사는 천자의 말을 기록하도록 했고, 이것이 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사마천(*)’의 ‘사기(史記)’와 ‘동호’의 ‘동호직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사마천의 사기(史記)

사마천의 집안은 대대로 조정의 사관을 지냈으며 약관의 나이에 수많은 책을 읽고 역사자료를 수집하였다. 사마천은 27세에 한무제 비서실의 '낭중(황제의 시종)' 이 되었으며 38세에 천문역법과 도서를 관리하는 '태사령' 이 되었다. 그는 친구인 이릉 장군에 의해 극적인 삶을 살게 되고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역사서이자 걸출한 문학 작품인 '사기' 를 탄생시켰다.

친구인 이릉 장군은 흉노와의 전쟁에 참가하였으나 오히려 흉노에게 포위당하자 부득이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투항하였다. 사마천은 투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남자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궁형(남자는 생식기를, 여자는 음부를 도려내는 형벌)' 에 처해졌으니 그의 나이 48세였다. 이듬해 한무제의 비서실장 '중서령' 에 발탁되어 약 60세쯤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측한다.

사마천은 저술의 동기를 '가문의 전통인 사관의 소명의식에 따라 조상의 뜻을 계승하고 아울러 궁형의 치욕에 항거하여 입신양명의 효를 이루고 후세의 거울로 삼기 위함' 이라 했으며, 저술의 목표를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규명하고 고금의 변화를 통하여 일가의 주장을 이루려는 것' 이라 하였다. 아버지의 유고로 완성된 '사기' 는 전설속의 황제로부터 사마천이 살았던 한나라 무제와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약 3천년을 저술한 세계사적 통서이다. '사기' 는 본래 '태사공서' 또는 '태사공기' 라 했으며 위, 진 이후에 '사기' 라 불렸다. '사기' 는 130편, 52만 6500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체제는 지배자 또는 제왕의 일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12편, 제후 왕들과 그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의 역사와 전기를 30편에, 연표와 원표가 10편, 정치사가 미처 포괄하지 못한 역대의 제도·문화·경제·제사 등에 8편, 시대를 상징하는 개인들의 일대기와 주변 민족들의 역사를 다룬 열전 70편 등이다. 이 외에 각 편이 끝날 때 마다 '태사공 왈' 로 시작되는 사마천 자신의 간략한 평론이 실려 있다.



[사마천의 초상화와 그가 편찬한 <史記>]

○ 동호직필 (董狐直筆)

‘동호직필’이란 ‘동호(진나라의 사관)의 곧은 붓’이라는 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바르게 기록한다는 뜻으로 흔히들 언론에서는 ‘직필’로 줄여 사용한다. 말 그대로 동호가 사실에 틀림없이 역사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春秋左傳> (<춘추좌전> 공자가 펴낸 역사서인 ‘춘추’를 바탕으로 사회적 철학적 요소를 가미한 재생산물로 ‘좌구명’이 지은 책, 일반적으로 ‘좌전’이라 한다)을 보면 때는 선공 2년, 이 고사의 주인공인 동호 이전에 조순(趙盾)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진영공(진문공의 손자)이 7세에 즉위 할 때 중군원수(中軍元帥)로 있으면서 군주를 보필했다. 그런데 진영공은 심성이 포악하였고 즉위 후로는 더욱 사치하고 음란하였으며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폭군이였다. 조순은 여러 차례 간언하였으나 오히려 눈엣가시였으며 영공의 입장에서는 제거의 대상일 따름이었다. 그래서 영공은 도안고(屠岸賈)라는 자객을 보내어 그를 암살할 계획을 꾸미게 된다. 그런데 막상 음모를 실행하려 조순의 집에 잠입한 도안고는 계획을 거두고 만다. 왜냐하면 언제나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학문과 정사에 여념이 없던 조순을 보면서 그만 감탄한 나머지 오히려 나무에 머리를 받아 자결한다.

암살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영공이 직접 조순을 궁으로 초청하여 죽이고자

하였다. 잔치에 초청된 조순이 궁으로 들어오자 영공은 사람을 시켜 늑대개를 풀어서 그를 물어 죽이려 했다. 이때 조순의 호위 군사가 달려들어 개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중과부적의 군사를 대응하면서 조순을 위해 죽을 때, 조순은 도망을 쳤으며 도중에 아들을 만나 함께 이웃 나라로 망명의 길을 떠난다.

반전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조순 일행은 망명 중 친척 동생인 조천과 조우하게 되었다. 일련의 사정을 들은 조천은 망명 중인 조순에게 잠시 은신하라고 조언하였으며, 자기가 반드시 일을 처리할 테니 훗날을 기약하자고 한다. 그리고 조천은 수도였던 강성(絳城)에 돌아와 거사를 일으켜 진영공을 제거하였으며, 진문공의 아들 진성공을 군주로 모시고, 곧 조순을 불러 모든 국사를 장악하게 된다.

포악한 진영공이 제거되어 모든 백성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조순은 내심 걱정스러웠다. 왜냐면 어쨌든 그는 군주를 죽였다는 점이고, 이것이 그의 가문대대로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것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는 당시 태사(太史-역사기록 담당관)였던 동호를 불러서 당시 일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에 동호가 보여준 기록에는 “을축(기원전 607년) 가을 7월, 조순이 도원(桃園)에서 국군(國君) 이고(夷臯)를 죽였다” 라고 조순을 살인자로 기록한 것이다. 이에 놀라 조순이 자신과 무관함을 적극 변명하자, 동호는 “국난 중에 정승의 몸으로 도망간 것도 허물이거늘, 하물며 돌아온 후 역적 조천을 죄로 다스리지 않았으니 시해의 장본인이 당신이 아니고 누구냐” ...

그러자 조순은 탄식하면서 “그때 그대로 국경을 넘어 망명을 할 것을, 그래도 나랏일이 걱정되어 돌아 왔더니 결국 이런 죄명을 쓰게 되었구나...”

훗날 공자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동호는 훌륭한 사관이다. 법을 굽히지 않고 바른대로 썼으며 또한 조순은 훌륭한 대신이다. 법을 위해 싫은 이름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 우리나라의 사관

‘중종실록’을 보면 ‘사관의 지위는 높지 않지만 만세의 공론을 쥐고 있으니 위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사사로이 아부해서도 안 된다. 크게는 임금의 득실과 작계는 대신의 선악을 붓으로 기록하되 예의가 바르며, 능률하고 의연해야 한다. 결코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소속이 아니다’라 했듯이 사관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었다. 오죽했으면 무소불위의 폭군 연산군조차도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사관과 史書뿐이다”라고 고백했을까.

조선시대 사관들은 예문관소속 봉교(정7품), 대교(정8품), 검열(정9품)의 벼슬을 말한다. 이들이 소위 말하는 翰林(한림)들이다. 사관은 황제나 국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곁에 있었다. 더구나 친숙한 관계라기보다는 지긋지긋한 존재였다고 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감시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에 의해 기록까지 되고 있으니 그 얼마나 징그러운 존재였겠는가. 심지어는 여자 사관을 뽑아 왕의 잠자리까지 기록하자고 했다 하니, 아마도 사관 때문에 정신병을 앓은 왕은 없었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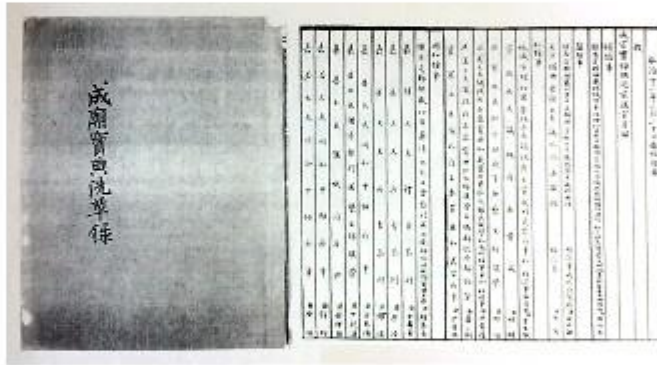
조선시대에는 예문관 소속 8명의 전임 사관(한림)들이 있고 그 외 춘추관의 3정승을 비롯해 왕의 비서에 해당하는 6승지들도 모두 사관을 겸직했다고 한다. 또한 현재의 속기록과 같은 사초를 쓰기 위해 한림들은 그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흘림서체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사초’란 무엇인가.

사초란 사관들이 역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록해 놓은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한림 8명이 기록하는 사초를 家藏史草(가장사초)라고 하는데 보통 사초라 하면 이를 두고 일컫는다. 사초를 근거로 실록을 편찬할 때 초고는, 초초(初草-초벌원고)와 중초(中草-수정원고)로 나뉘어 진다. 실록편찬이 마무리된 뒤 이러한 초초와 중초의 원고들은 반드시 글씨를 씻어내는 세초(洗草)를 한다. 실록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요, 종이를 재생함이 두 번째 목적이다.



[인조반정 당시 이괄 등이 광해군 폐위를 논하면서 칼을 씻었던 <세검정>의 모습. 바로 밑에 사초를 세초했던 ‘차일암’ 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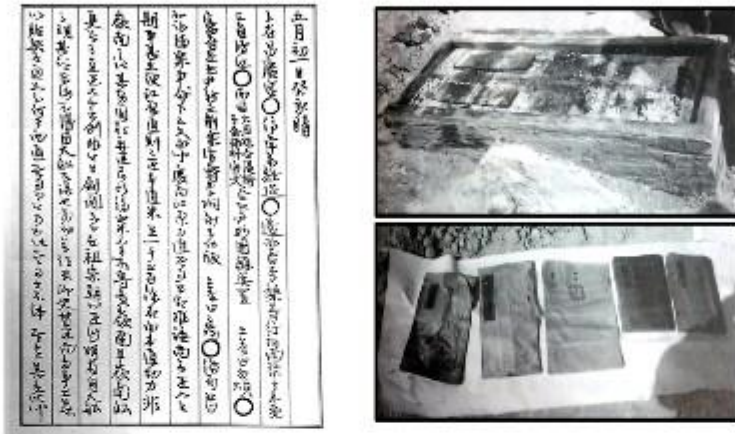


[최초의 세초기록인 ‘성묘보존세초록’ 의 표지와 속지]

현재의 속기록과 같은 사초를 쓰기 위해 한림들은 그들만이 알아 볼 수 있는 특유의 흘림서체를 사용했는데, ‘조보’ 라는 어전신문의 이름을 인용, 그 흘림서체를 ‘조보체’ 라 하였다. 이 조보체는 지금의 속기문자와는 전혀 다르지만 당시로는 가장 빨리 기록할 수 있는 흘림체였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 전달수단으로 볼 수 있는 ‘조보’ 는 삼국시대부터 존재하던 기별제도가 발달,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본격화 되었다. 조보는 매일 1회 전날에 일어난 일을 기록해 반포하는 것으로 오늘의 신

문(?)이라기보다는 관보와 같은 것이다. 주요 내용은 임금의 지시를 비롯하여 누가 어떤 상소를 올렸다는 내용, 과거 합격자 명단, 조정의 결재사항, 인사 발령사항, 관리의 징계, 그 이외의 돌발사건등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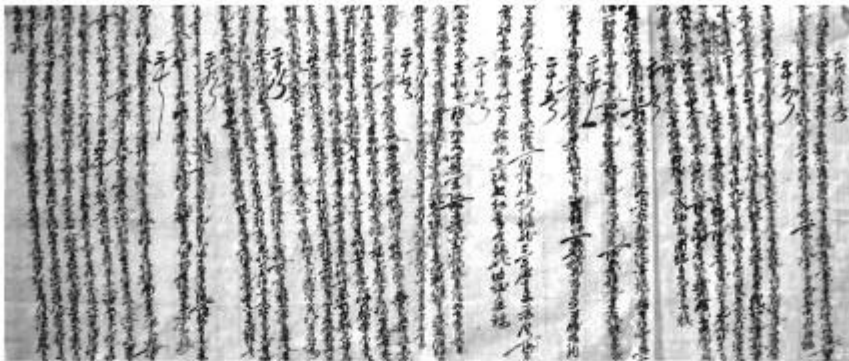


[사관 정태제가 인조 15-16년에 걸쳐 기록한 당시의 사초와 그의 미이라. 1987년 3월 동래 정씨 이장작업 중 발견]

조선 태조 (1392년) 예문 춘추관에서 발행한 ‘조보’ 는 고종 31년(1894년) 8월 초에 ‘대한제국관보’ 로 이어지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해인 1948년 9월 1일부터 ‘대한민국관보’ 라는 이름으로 맥을 잇고 있다.

한편 조선조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경국대전’ 에 나오는 정치원칙의 골격은 첫째, 임금 앞에서는 큰소리로 국정을 논해야 공명정대한 정치가 되며, 둘째 영의정이라 해도 임금과의 독대를 금하게 하여 밀실 정치를 지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초를 기록하는 당시의 ‘사관제도’ 는 반드시 2명의 사관이 입회하여 기록을 하였다. 2명의 사관이 입회하는 것은 현재의 의사당에서 주무와 부무 두 명의 속기사가 입회하는 제도와 같아 보이지만, 조선조에는 두 명 중 한 명은 회의에서 오가는 말을 가감 없이 직필하고 다른 한 명은 발언자의 언행과 어전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를 기록하는데 반해, 오늘의 속기사는 두 명 모두 발언내용을 함께 기록하여 오청과 오기를 방지하기 위함에 차이가 있다.



[예문관 한림(전임 사관)이 필사한 조보]

사관은 임금의 언동과 국가 전반에 걸친 정사 및 논평을 곁들인 사초를 작성하고, 관내에 보관된 실록과 각종 문서와 서적을 관리하며, 지방 서고에 보관된 책자들의 포쇄(별에 말려 습기를 없애는 일)를 담당하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문관 사관들은 궁내에 있는 여러 개의 문한관아(홍문관, 성균관, 춘추관, 한림원 등) 중에서 한림원과 더불어 가장 존중과 높임을 받아 유학자들이 입관하기를 선망하는 관아가 되었다.

결원이 생기면 가문이 좋고, 문학과 문장이 뛰어난 ‘문과급제자’를 엄선하여 선발하였는데 그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었다.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곧은 절개를 지키며 과감하게 직필할 수 있어야 했다. 사관으로서 책임자라 하여 추천되면 사관 이상의 벼슬을 역임한 자와 홍문관, 예문관등의 당상들이 모여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가 끝나면 예복을 갖춰 입고 분향을 하며 다음과 같은 축문을 읽었다.

‘維歲次 〇〇년〇〇일〇〇시에 〇〇가 황천후토(皇天后土 천상계와 지상계의 신)께 감히 아뢰나이다. 사필을 잡은 임무는 국가에서 가장 높고 무거운 것이니 추천된 자가 책임이 아니면 반드시 화가 따를 것입니다’*

[* 대부분 황천후사(皇天後土)로 잘못 기술하기에 필자가 바로 잡는다]

추천이 잘못되면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는 이 얼마나 엄숙하고도 섬뜩한 말인가. 그만큼 사관의 임무가 막중하다는 반증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관으로는 천자문으로 유명한 ‘한 호(석봉*)’ 와 연산군 4년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 을 사초에 실어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김일손(*)’ 등이 있다.

속기계에서는 한림들이 쓰던 필법이 독특한 흘림체를 매우 빠르게 기록하여 판독하기가 불가할 정도의 필체이므로 ‘속기’ 의 유래로 보거나 속기의 영역에 넣기도 하는데 사실상 성격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1893권 888책이라는 방대한 기록으로 ‘조선왕조실록’ 을 남긴 그 사관들과 비교하여 국회속기사를 ‘현대판 사관’ 이라고 비교하며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사관과 속기사가 기록을 남기는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날 제헌국회 이래 현재까지 국회에서 진행된 의사진행과정을 속기로서 기록하여 또 앞으로도 남겨갈 것이라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속기사 스스로가 과거의 사관들처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가끔은 자문해 보기도 한다.

오늘날 속기사를 일컬어 조선조 때 사초를 작성하는 사관에 비유하는 것은 속기사의 직책이 사관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고, 또한 속기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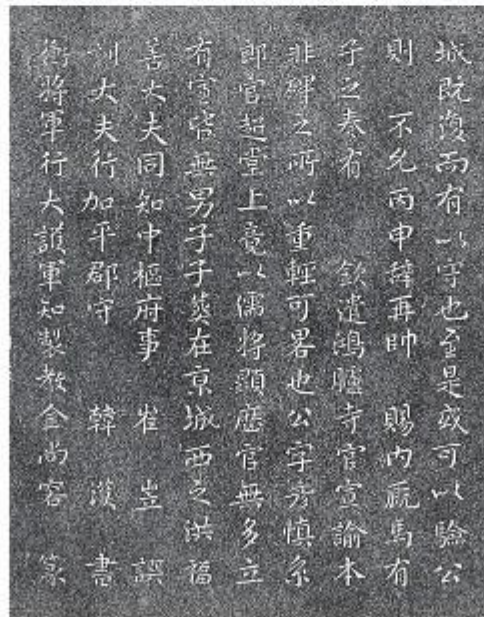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않는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기록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는 속기사의 신조에 따라 모든 속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김일손 (1464-1498) : 김종익의 문하생으로 23세에 생원시에 장원, 진사시에 차석합격. 1487년 전주향교의 교수로 부임. 이후 홍문관 애문관 승정원등에서 정자 검열 **주서** 감찰 등 언관과 사관으로 부임. 무오사화로 34세의 젊은 나이에 극형에 처해진 강직한 성품의 사관.

* 조의제문 (弔義帝文) :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종직(1431-1492)이 지은 제사 조문으로 항우에게 살해당하여 물에 던져진 희왕, 즉 초 의제를 추모하는 글로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풍자하여 지은 글이다. 사관 김일손이 이 '조의제문' 을 사초에 적어 놓았다. 1498년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훈구파 이극돈이 사초에서 발견하여 단종과 세조를 동시에 헐뜯은 것이라고 연산군을 충동질함으로써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이에 사림과 모두가 숙청 내지는 극형에 처해졌다.

* 한석봉 (1543-1605) : 25세에 진사시에 합격, 사관이 되어 나라의 문서와 외교문서를 씀. 그 후 선조는 글씨공부에만 전념하도록 일이 적은 가평군수로 임명. 왕희지체를 습득 자신만의 글체를 완성. 1583년 선조의 명령으로 '천자문' 을 씀.



[한석봉이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 쓴 행주대첩비]

3. 속기문자의 가치

신문기자나 방송인 또는 역사가들도 현실을 기록하여 후세에 사료를 남기지만 그들의 기록은 자신들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 이에 반해 속기사는 지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은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나 진실성, 증거성, 참고성, 공시성 등 그 가치에 있어서는 단연 속기사의 기록이 앞선다.

어떤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다. 가치에는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 이를 속기에 대입해 보면, 속기의 절대적 가치는 속기문자 및 그 기능의 객관적인 분석에 의해 정해지고, 상대적인 가치는 속기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공급과 수요의 관계라 하겠다. 좀 더 세분해 보면

- 가. 속기문자 체계 자체가 갖는 가치,
즉 문자로의 가치
- 나. 속기문자가 사용됨으로써 생기는 가치,
즉 속기운용의 효용가치
- 다. 속기문자를 운용하는 인간의 가치,
즉 인간이 문자를 운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속기문자 자체가 갖는 가치를 보면, 속기문자는 말을 받아쓰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추구가 우선하고 있으므로 극도로 간략화 되었고, 그 간략화의 단위가 ‘語’에서 ‘句’ 나아가 ‘文’ 까지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극도로 간략화 된 속기문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언어의 지식이 고도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될 수 있다.

이 전제 때문에 속기문자는 일반문자와 다른 특수한 기호로 되어 있어서 평범하게 널리 사용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물론 잘못된 평가는 아니지만 이

것은 단순히 속기문자의 모습만 강조한 평가로서 이것만 가지고 속기문자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단견으로 본다.

속기문자는 어느 속기법식을 막론하고 ‘기본문자’와 ‘약법’ 그리고 ‘약자’로 이루어져 있다. 애당초 속기체계는 발언의 속도에 맞추어 기록을 하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약법이나 약자의 경우에는 고속도의 속기를 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나 지식의 정도에 따라 달리 운용되며 또한 스스로 속기문자를 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문자는 누구든지 읽고 외우고 쓰기에 충분하며 일반문자보다 훨씬 간단하며 오히려 뛰어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간단한 생활속기(메모, 일기 등)나 비서속기 등에서는 기본문자만 가지고도 활용가치가 충분하기에 이 기본적인 속기문자를 사회에 널리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속기문자가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가치를 보자.

문자란 반드시 ‘빨리 써야한다’라는 의미를 전제로 창안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속기문자는 언어를 ‘빨리 받아 써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안되어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속기문자의 목적성이 있고 동시에 사용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가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기록시간의 단축’에 있다. 인간의 언어활동을 사고언어, 발성언어, 문자언어로 나누어 보면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사고언어이며 다음이 발성언어, 마지막으로 문자언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늦은 속도의 문자언어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사고언어활동의 기록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속기문자는 사고언어활동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문자보다는 훨씬 완전해 가깝도록 기록할 수 있다. 사고나 발언을 ‘기록한다’는 데에 관해서는 시간의 경제성에 있어서, 또는 내용의 충실함에 있어서 속기문자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실로 지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속기문자를 운용하는 인간의 가치를 보자.

일반적으로 ‘속기한다’라는 행동은 속기문자로서 ‘말’을 받아쓰는 행위와 기록한 속기문자를 일반문자로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번문’하는

행위가 동시에 포함된다.

‘말’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순간적으로 표출하고 단어나 어휘의 선택을 순간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적의 표현으로 구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발언자가 처해 있는 상황, 사용한 언어, 내용 등을 망라하여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언자가 진실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최적의 표현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행동이 변문에는 필요할 것이다.

즉, 속기문자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표상으로서 ‘발언자를 대신해서 발언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상담자’ 로의 모습이 탄생하는 것이다. 고도로 기계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본능·관습·지성 등 인간성의 깊은 이해에 위치하여 속기문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일반문자로 변문하는 ‘표현 상담자’ 이자 직업적으로 속기기술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속기사야말로 인간의 가치 중 최고라 할 수 있겠다.

4. 속기의 당위성

Mr.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형 전 의원(7선)은 ‘속기록은 법으로 작성되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는 중요한 역사의 기록’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질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로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국회속기록을 찾아보고, 회의의 진행상황을 알게 되었다” 고 한다. 그는 평소에도 회의가 끝나면 어떤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 및 답변을 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국정심의회 일관성과 연속성이 없어진다고도 했다.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속기록을 인용할 때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며 새삼 속기록의 중요성을 느끼며 ‘역사의 현장에서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진실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기록하는 사관’ 이라고 속기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속기사를 채용하여 의정활동을 했던 홍사덕 전 의원(6선) 역시 “제헌국회 이래 의원들의 평가는 속기록에 드러난 언행에서 나타난다” 며 속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속기사들은 문법에 맞지 않는 말을 바로 잡아 주기도 하는데 그는 ‘에, 또, 어, 음...’ 등의 소리까지 다 기록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그 속기록을 본 사람들이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영구적으로 망신을 당하겠구나!’ 하고 의원들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했다.

‘인간시장’ 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김홍신 전 의원(2선)은 ‘젊었을 때 속기를 배우지 못한 게 못내 아쉽고 후회스럽다. 속기를 배웠으면 글이나 소설을 쓸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텐데...’ 라고 토로한 바 있다. “기록은 아주 중요하다.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속기록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된다. 속기사들은 회의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회의진행 요원으로서 그 회의에서 나온 언어를 활자화하는 과정의 전문가로서 찬사를 보낸다” 고 하였다.

필자 역시 적지 않은 회의에 참석하고 많은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잠시 국회사무처 홍기표사무관의 말을 빌려 보자.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속기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하면 간혹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하기도 한다.

“사초로서 속기록의 정확성과 증거성·참고성·공시성 등을 강조하는데, 조선왕조실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관의 기록이 전부였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국회나 의회 등에서 회의가 열렸다 하면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한다. 속기록 뿐 아니라 영상도 있고 녹음도 있지 않느냐?” 는 우문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속기록이나 녹취록 회의록 등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 물론 속기사 지망생들도 이런 말들을 가끔은 하기도 한다. 속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원이나 관리자도 있는 반면에, 상기한 내용으로 속기의 불필요성을 말하는 이도 있다. 어쩌면 의원들 중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다만 궁금한 것은 ‘왜 어느 누구도 속기사 폐지, 속기록 폐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의 회의록은 거의 대부분 속기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전문(全文)회의록이다. 물론 전문회의록 외에 요약 회의록을 동시에 발행하는 국가도 있다. 근자에 들어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녹음을 이용한 국가도 있으나 속기와 비교하면 그 경제성이나 능률성은 한참 떨어진다.

만약 위의 관리자들의 말을 빌리면 수많은 언론매체들이 그날그날의 회의를 주요 뉴스로 내보낸다. 또한 영상회의록을 찾아 과거의 영상도 보여 준다. 회의가 특히 국회가 열릴 때마다 각종 신문이나 TV·라디오 등을 통해서 보도되지만 사실 그 보도라는 것이 몇 가지 이슈에 국한되며 그 분량도 지극히 미미하다.

한 예로 TV 뉴스에 나오는 국회소식은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외가 전부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만 해도 6~7시간을 해야 한다. 또 16개 이상의 상임위가 일제히 열릴 때에는 하루에 100시간을 넘기기 허다하다. 그러나 뉴스로 전달되는 소식은 하루 분량의 몇 백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신문 역시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밖에 보도가 안 되는데 더구나 기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사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보수, 진보를 추구하는 신문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또한 영상회의록을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음질이나 화질이 과연 영구불변으로 보관 유지가 가능한가이다.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어느 날의 회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녹음내용도 발언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관련부분을 찾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들으면서 일반문자로 필기하려면 그 불편함이야 오죽할까.

이런 등등으로 속기록은 필요한 내용을 단번에 찾아 볼 수 있고 내용파악 역시 다른 기기와는 달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월하다. 따라서 아무리 기록매체의 기록 방식이 다양화된다고 해도 ‘말한 대로 기록인 속기록’의 편리성과 경제성을 이길 방식은 아직, 아니 앞으로도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

다.

물론 여기에는 속기록의 생명인 ‘정확성’ 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지만 모든 속기록은 그 완벽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5. 속기가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

역사는 기록이다. 기록이 있기에 인류문화가 존재하는 것이다. 기록의 주체인 인류는 기록의 수단으로 문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문자를 만든 인류는 문자의 활용과 함께 더 빨리 쓰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속기문자와 속기술을 탄생시켰다.

속기술이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특히 언어 및 정치문화에서 속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정도이다. 과거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어전회의를 비롯한 행위가 거의 정치이며, 고대 로마시대의 원로원 역시 정치가 주 무대였다. 현재도 정치의 주 무대인 의회 의사당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누가 뭐래도 속기석이다. 발언자의 발언을 가장 정확히 들을 수 있고, 장내의 분위기를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속기석인 것이다.

또한 의회에서 반드시 정치문제만 발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모든 분야가 세분화되어 정치 외에 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종교·법률 등 국가나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총망라한다. 따라서 현대판 사관이라 할 수 있는 속기사들이 의회에서 행하여지는 발언 및 주변의 모든 행위들을 가감 없이 기록하여 ‘속기록’ 이라는 문헌으로 발간하여 보존한다.

이 속기록은 그 어느 사료보다 정확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사초’ 바로 그것이다.

의회속기록을 보면 발언자의 사상이나 인품 그리고 역량을 볼 수 있으며 나라와 국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공헌도를 알 수 있다. 때문에 발언자는 속기록을 의식하며 발언하며, 이러한 분위기는 곧 발언자의 자질을 높이는 계

기로 작용한다. 이 속기록이 기술한 자체에만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록은 역사학자들에게는 ‘사료’ 를, 언론인들에게는 기사거리를, 경영인들에게는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문인들에게는 작품의 소재를, 학자들에게는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그 밖에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때부터 속기록을 가진 나라이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초대의회부터 속기록을 작성·발간한 국가는 미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국가 특히 선진국이라 해도 의회정치 초기에는 속기록을 작성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에 속기의 문화가 탄생하는데 근간이 된, 근대 속기의 본산이요,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영국도 피트맨 속기를 창안한 ‘피트맨’ 이 의회속기록을 작성하여 민주주의가 정립되는 데에 큰 공로를 인정받아 ‘빅토리아 여왕’ 으로부터 Knight 라는 기사칭호를 수여 받았지만 초창기부터 기록을 남긴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기록에 있어서 스피드와 능률을 추구하는 속기는 고도의 문화사회에서나 실용이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의 속기는 우리 문화의 귀중한 유산임에 틀림없다.

제22회 속기학술세미나 주제발표집

한글속기 자격 및 교육훈련 현황

이경식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제1절 개요

1. 속기의 정의

속기란 사람의 말을 문자로 기록하기 위하여 특수한 부호로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한 후 일반문자로 다시 바꾸는 것을 말하며, 이 기술을 속기술이라 하고 이 속기술을 구사하는 사람을 속기사라 한다. 그러므로 속기사는 단순히 빠르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어감, 주위 분위기를 고려하는 능력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또 좌담이나 회의의 경우 잘 들리지 않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의 말까지 기록하는 것이므로 기계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으며 속기의 주요대상이 역사적 중요 사항이거나 법적인 사항 등 언제나 중요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정확도가 100%일 것을 요하는 것이어서 어설픈 정확도를 가지는 방법으로 속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속기는 풍부한 상식을 바탕으로 한 듣기 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즉, 속기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떤 특정의 부호문자인 속기문자로 정확하게 빨리 필기하여 이것을 일반문자로 번문하는 활동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기활동의 수단인 특정의 기호(부호)를 속기문자라 하고, 속기문자를 사용하여 속기하는 기술을 속기술이라 하며, 이 같은 속기술의 공인자격을 갖춘 사람을 속기사, 속기사에 의해 속기된 기록을 속기록이라 한다(대한속기협회, 1998).

속기사는 인간생활의 광범위한 언어활동에 있어서 그 언어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기록, 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사회가 다양화하면서 속기의 영역도 급속히 확대되어 가는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다방면의 토론을 일언일구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역사의 기록자로서, 상반된 이해관계로 야기되는 다툼의 틈바구니에서도 어김없는 유력한 증거력의 보존자로서 사회적 역할이 막중하다. 이렇게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속기사에게는 첫째, 유능한 속기술과 풍부한 경험, 둘째, 폭넓은 상식과 명석한 두뇌, 셋째,

문장력과 같은 자질과 능력이 요구된다(대한속기협회, 1998).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은 시청각 면에서 정확성이 속기록보다 뛰어나지만 시청각 이외의 분위기나 원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속기록을 당해 낼 수 없다. 녹음기 역시 청각적인 면에서는 속기록보다 뛰어나지만 그 밖의 분위기 묘사의 표기 면에선 속기록을 당할 수 없다. 회의장면이나 발언내용을 비디오 촬영 또는 녹음을 해두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수의 사람에게 회람시키거나 영구보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문자화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속기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생산적인 기록이 어렵다. 즉, 우리가 서류 없는 OA시대를 구가한다 해도 종이와 필기구를 멀리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속기술 역시 그러하다(대한속기협회, 1998).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속기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속기의 역사 및 종류¹⁾

한국의 속기는 박여일이 하와이에서 1909년 조선 속기법을 창안, <신한일보>에 발표한 것이 시초이다. 1925년에는 방익한, 이원상이 <시대일보>에 [조선어 속기술]을 1927년에는 김한터가 <신조선>에 [우리말 속기법]을, 엄정우가 <동광>에 [조선 속기법]을, 1935년 강준원이 <동아일보>에 [조선어 속기술강해]를 각각 발표했으나 일제 강점기라 모두 발표에만 그쳤다. 8.15광복 후에는 1946년 장기태의 [일파식]을 필두로 같은 해 김천한의 [고려식], 1947년 박인태의 [중앙식], 1948년 이동근의 [동방식]과 박송의 [조선식], 1950년 김세종의 [세종식], 1956년 남상천의 [남천식]등이 창안되었다.

1968년에는 국회에 속기사양성소가 설립되었고 1969년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가 연구하여 창안 발표한 [의회법식]을 국회속기사양성소에서 교육²⁾하기 시작했다.

1) 대한속기협회(1998), 한국속기50년사,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http://www.kcost.org>), 한국스마트속기협회(<http://www.casi.co.kr>)에서 발췌하였음.

2) 1990년대 말 국회에서의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아 양성소를 폐지하여 현재 민간학원을 중심으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음.

1993년에는 1970년대 후반 경에 국내에 도입된 속기기계와 컴퓨터를 연결한 컴퓨터속기(Computer Aided Steno-machine/CAS:컴퓨터를 이용한 속기기계)가 국내에서도 개발되었다. 우리나라 초창기의 속기기계는 미국의 속기기계를 수입하여 한글화한 것과 미국 속기기계를 본떠서 만든 속기기계가 있었으며 이 미국 속기기계를 본떠서 만든 속기기계를 핵크닥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미국 속기기계를 본떠서 개발된 속기기계인 핵크닥은 한글의 특성과 맞지 않다는 단점과 수입품이라는 점, 속도향상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다. 1994년에는 한국형 속기기보드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속기는 그 수단에 따라 수필속기, 타자속기 및 컴퓨터속기로 구분된다. 또한 창안자에 따라 수필속기는 20-30가지, 타자속기의 경우에는 1가지가 있으며, 컴퓨터속기의 경우는 4-5가지가 있다. 수필속기 법식으로는 [일파식], [서울식], [의회식], [동방식], [고려식] 등이 대표적이며 그 밖에 [남천식], [중앙식], [한글식] 등이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이외의 나머지 법식은 속기사를 배출하지 못한 법식도 있다.

타자속기의 경우는 미국식 속기타자기를 들여와 한글로 개조한 방식이 일부에서 활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배우는 곳이나 보급하는 곳이 없어 명맥이 끊긴 상태이다.

컴퓨터속기의 경우 1993년부터 몇 가지가 발표되었다. CAS컴퓨터속기를 필두로, 감퓨타(현 소리자바)는 전문 속기자판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갖춘 형태이며 일반 자판에 소프트웨어를 갖춘 빠른손워드, 넥스젠 등이 있다. 컴퓨터속기란 펜을 사용하는 기존의 수필속기와 구별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속기 방식으로, 발언하는 사람의 말을 발언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실시간에 입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속기 전문 키보드"를 활용하여 속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필속기가 펜을 사용하여 속기문자로 기록한 후에 이것을 일반 한글로 번역하는 번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해 컴퓨터속기는 속기하는 즉시 모니터에 한글로 출력되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은 물론,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등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호환된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컴퓨터속기는 수필속기에 비해 활용도가 다양하고 어렵지 않아 누구나 비교적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70년대에 회의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속기 작업을 마칠 수 있는 "컴퓨터속기"가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90년대 들어서야 처음 이러한 컴퓨터 속기가 시작되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때까지 축적된 많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컴퓨터속기에 대한 사전 연구 작업을 통해 컴퓨터속기 키보드의 편집키 적용 등 선진국보다 발전된 컴퓨터속기 방식을 구현할 수 있었다.

제2절 속기 자격제도

1. 국가기술자격

가. 변천

우리나라 최초의 속기 자격은 국회에 종사할 속기사를 양성하기 위한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을 1968년 2월 3일 제정(국회규정 제25호)함으로써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속기사양성소를 설치하였고, 대한속기협회에서 1969년 5월 1일 자격심사 및 기능검정규정을 제정하여 속기사자격검정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때 속기사 자격은 국어속기와 영어속기로 구분하여 각 1급에서 8급까지 8등급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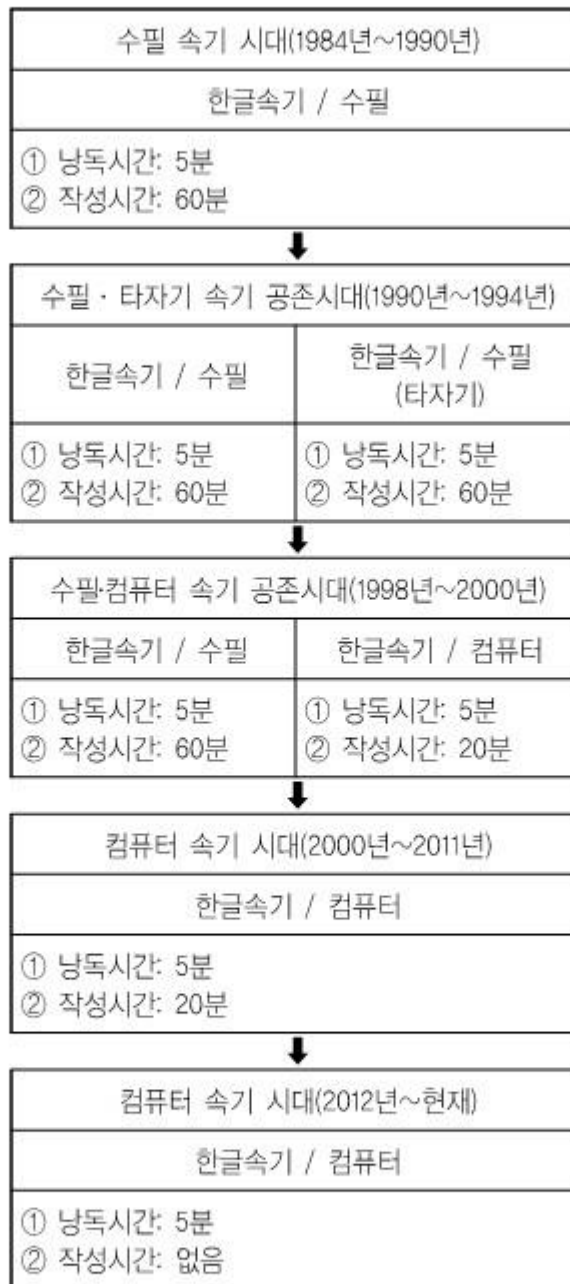
이후 82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의해 국어속기와 영어속기를 통합하여 속기(한글속기/영문속기)라 칭하고 6급, 7급 및 8급을 삭제한 1급~5급이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흡수되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일괄하여 검정을 시행하였으나 1984년 1월 대한상공회의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83년 12월 20일)로 이관되어 4급과 5급이 폐지되고, 영문속기 자격이 신설되었으나 자격취득자가 매우 적어 2005년 폐지되었다. 속기 자격종목의 구체적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속기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변천

구분	1982	1984	2005
자격명칭	속기	한글속기 영문속기	영문속기 폐지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4급(폐지), 5급(폐지)	

한글속기 자격의 검정방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II-1]과 같이 초창기에 필기도구를 사용하던 시대에는 ‘수필 속기 시대’였으며, 이후 미국식 타자기의 도입으로 ‘타자기 속기 시대’가 공존되어 왔으며, 컴퓨터 전용 시대가 되면서 컴퓨터 키보드에 직접 입력하는 ‘컴퓨터 속기 시대’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속기 자격 검정의 변화는 작성시간의 변경만 있었을 뿐 이외 현장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격제도 운영에 반영한 실적은 매우 미미하였다.

[그림 II-1] 검정방법 변천



나. 검정체계

한글속기 자격의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등급의 응시 요건에는 제한이 없다. 검정방법은 등급별 동일하며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을 시행하고 있다. 합격기준은 출제된 총 자수(음절수)의 90% 이상의 정확도로 하고 있다. 한글속기 시험에 사용되는 속기프로그램에는 제한이 없으나, 검정 시 녹음과 같은 부가 기능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 CAS, 소리자바 등이 사용되고 있다. 시험에 필요한 관련기기 및 프로그램(PC 및 프린터기 제외)은 제한하지 않으며 필히 수검자가 지참하여야 한다. 낭독된 문장은 속기기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속기)한 후 낭독이 끝나면 즉시 저장하고 수정 및 편집을 금지하고 있다. 한글속기 자격의 자격체계를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한글속기자격의 검정체계

자격종목 및 등급	출제분량		낭독시간	합격기준	응시요건
	연설체	논설체			
한글속기 1급	1,600자	1,450자	5분	정확도 90% 이상	제한 없음
한글속기 2급	1,500자	1,350자	5분		
한글속기 3급	1,350자	1,200자	5분		

다. 응시현황

한글속기 1급, 2급, 3급 자격의 응시자수는 <표 II-3>에서와 같이 2009년을 기준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 법원, 검찰, 경찰, 자막방송, 교육속기 등 속기사의 활동 영역 확대에 따른 사회적 수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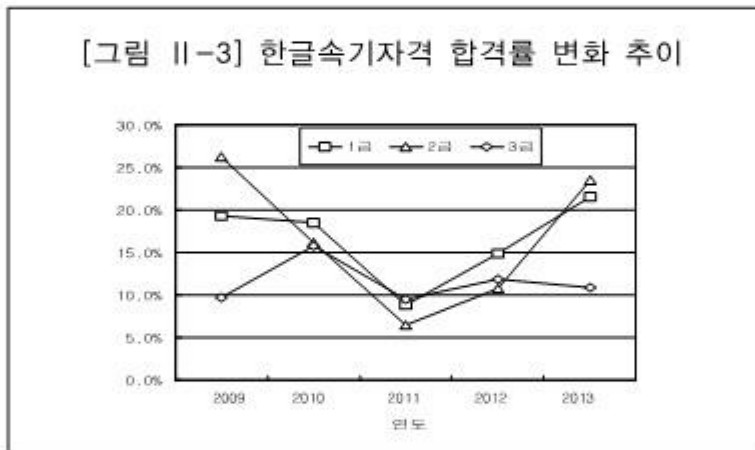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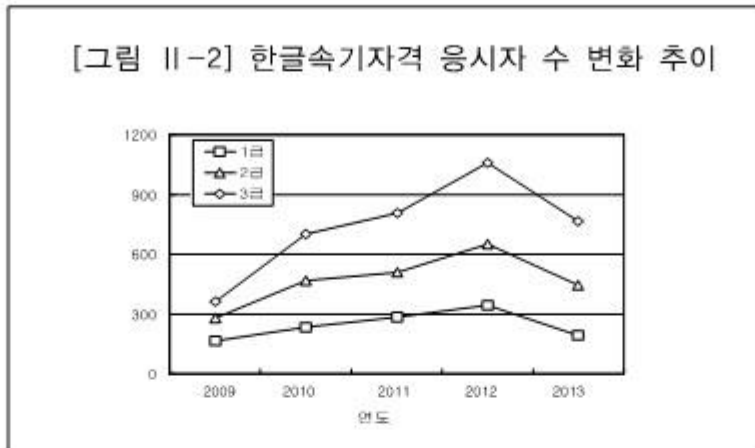
〈표 II-3〉 연도별 속기자격 응시현황

[단위: 명, %]

등급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급	응시자수	628	753	903	1,182	1,580
	합격자	182	99	227	118	195
	합격률	28.9%	13.1%	25.1%	10.0%	12.3%
2급	응시자수	1,120	1,254	1,245	1,374	1,870
	합격자	195	204	376	109	320
	합격률	17.4%	16.3%	30.2%	7.9%	17.1%
3급	응시자수	1,967	2,012	1,865	2,426	2,843
	합격자	242	152	250	245	379
	합격률	12.3%	6.2%	13.4%	10.0%	13.3%
	전체 응시자수	3,715	4,019	4,013	4,982	6,293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내부자료

또한 자격의 합격률은 〈표 II-3〉과 [그림 II-2] 에서와 같이 매년 변화가 심하며, 특히 기술기능계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수준이 가장 낮은 3급의 합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글 속기 자격의 특징 중 하나로 속기라는 직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속기 능력은 단기간에 습득 가능하기 보다는 3급 응시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1급 응시자는 1년 이상의 장기간 지속적인 듣기, 쓰기의 반복 훈련을 통해 습득 가능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자격취득자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초보자가 일정 수준의 속기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2. 민간자격

가. 컴퓨터속기

컴퓨터속기 자격은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 CAS 속기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실시간속기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의 등급은 1~8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설체와 논설체로 구분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4급 이하에서는 연설체만 검정하고 있다. 응시요건에는 제한이 없고, 합격기준은 90% 이상의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표 II-4〉 참조).

〈표 II-4〉 컴퓨터속기 자격체계

등급	출제내용 및 기준	낭독/편집시간	합격기준
1급	연설체 320자/분 논설체 290자/분	5분 낭독후 수정·편집시간 없이 바로 제출	과목별 정확도 90% 이상
2급	연설체 300자/분 논설체 270자/분		
3급	연설체 270자/분 논설체 240자/분		
4급	연설체 240자/분		
5급	연설체 210자/분		
6급	연설체 180자/분		
7급	연설체 150자/분		
8급	연설체 120자/분		

나. 디지털영상속기

디지털영상속기 자격은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으로 소리자바 속기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의 등급은 1~5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설체와 대화체로 구분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응시요건에는 제한이 없고, 합격기준은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II-5〉참조)

〈표 II-5〉 디지털영상속기 자격체계

등급	출제기준				합격기준
	시험과목	출제내용	낭독시간	편집시간	
1	연설체	1600자	5분	3분	각 과목별 정확도 98% 이상
	대화체	대화자 5명 이상 토론, 좌담 등 각종 회의내용	5분	5분	
2	연설체	1500자	5분	3분	각 과목별 정확도 97% 이상
	대화체	대화자 3명 이상 토론, 좌담 등 각종 회의내용	5분	5분	
3	연설체	1400자	5분	3분	정확도 95% 이상
	대화체	대화자 2명 이상 토론, 좌담 등 각종 회의내용	5분	5분	
4	연설체	1300자	5분	5분	정확도 95% 이상
5	연설체	1200자	5분	5분	정확도 95% 이상

다. 조서/수사속기

조서/수사속기는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와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사현장에서 조사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여러 사람이 불규칙한 속도로 대화하는 진술내용을 영상으로 전송 받아 실시간으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정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업무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격의 등급은 1~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연설체와 논설체로 구분 없이 조서로 시행하고 있다. 응시요건에는 제한이 없고, 소리자바/C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고, 합격기준은 등급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표 II-6〉, 〈표 II-7〉참조).

〈표 II-6〉 소리자바 수사속기 자격체계

등급	출제기준				합격기준
	시험과목	출제내용	낭독시간	편집시간	
1급	조서	3200자 분량의 3인 이상 신문내용	10분	5분	정확도 98% 이상
2급	조서	3000자 분량의 3인 이상 신문내용	10분	8분	정확도 97% 이상
3급	조서	2800자 분량의 3인 이상 신문내용	10분	10분	

〈표 II-7〉 CAS 조서실시간속기 자격체계

등급	출제기준			합격기준
	시험과목 및 출제내용	낭독시간	편집시간	
1급	1. 연설체 320자 2. 2인이상의 신문 내용 등	각 5분	실시간	정확도 90% 이상

라. 자막방송속기

자막방송속기는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청각장애인의 방송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TV 화면에 한글자막을 띄우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막방송 속기사를 배출하기 위한 검정제도이다.

소리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격의 등급은 1~3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검정은 대화자 5명 이상의 대화체로 시행하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자막방송실시간속기 자격체계에서는 1급만을 자격을 주고 CAS속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표 II-8〉〈표 II-9〉참조).

〈표 II-8〉 자막방송속기 자격체계<(사)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등급	출제기준				합격기준
	시험과목	출제내용	낭독시간	편집시간	
1급	대화체	대화자 5명 이상	5분	2분	정확도 98% 이상
2급	대화체	대화자 5명 이상	5분	2분 30초	정확도 98% 이상
3급	대화체	대화자 5명 이상	5분	3분	정확도 98% 이상

〈표 II-9〉 자막방송실시간속기 자격체계<(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등급	출제기준			합격기준
	시험과목 및 출제내용	낭독시간	편집시간	
1급	1. 연설체 320자 2. TV뉴스·토론프로그램 등	각 5분	실시간	정확도 90% 이상

3. 일본의 속기검정

일본의 속기기능검정은 문부과학성이 정한 속기기능 심사 기준에 근거해 시행되며, 일본속기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시험이다. 자격의 등급은 입문자 수준의 6급부터 전문가 수준의 1급까지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속기기능검정의 구체적인 체계는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일본 속기기능검정 체계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분 속	320자	280자	240자	180자	120자	80자
낭독시간	10분	10분	5분	5분	5분	5분
총자 수	3200자	2800자	1200자	900자	600자	400자
번문시간	130분	130분	60분	60분	60분	60분
합격기준	98%	98%	97%	97%	96%	96%
허용실점	64자	56자	36자	27자	24자	16자

검정내용은 속기와 번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번문시간이 1시간 이상 주어지고 있다. 특히, 1급과 2급을 제외한 급수에서는 번문 시 사전이나 참고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급별 합격기준의 정확도는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속기기능검정의 등급별 수준을 살펴보면 〈표 II-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급과 2급은 전문가 수준으로 대화, 강연 등을 단독으로 속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3급과 4급은 일상적인 사무 업무 중 전화 등의 내용을 속기할 수 있는 수준이고, 5급과 6급은 일반인들보다 빠르게 메모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속기기능검정은 전문속기사의 양성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의 업무 또는 생활에 속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등급도 병행하고 있다.

〈표 II-11〉 일본 속기기능검정의 등급별 수준

등급	구분	내 용
1	정도	회의·좌담·강연 등을 단독으로 속기할 수 있다.
	속도	분속 320급자를 기준으로서 10분간 계속해 낭독한 것을 속기할 수 있다.

	번문	상기의 경우에 130분 이내에 문자로 번문할 수 있다.
	정확도	번역의 경우에 사전·참고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정확도 98%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고도의 내용의 것에 대해 상용한자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한자, 현대 일본어 표기법 등을 올바르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2	정도	회의·좌담·강연 등의 속기의 보좌를 할 수 있다.
	속도	분속 280글자를 기준으로 10분간 계속해 낭독한 것을 속기할 수 있다.
	번문	상기의 경우에 130분 이내에 문자로 번문할 수 있다.
	정확도	번문의 경우에 사전·참고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정확도 98%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고도의 내용의 것에 대해 상용한자 및 그 외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한자, 현대 일본어 표기법 등을 올바르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3	정도	구술·전화 등의 속기를 할 수 있고, 번문을 도울 수 있다.
	속도	분속 240글자를 기준으로 5분간 계속해 낭독한 것을 속기할 수 있다.
	번문	상기의 경우에 60분 이내에 문자로 번문할 수 있다.
	정확도	번문의 경우에 사전·참고서 등을 이용해 정확도 97%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약간 고도의 내용의 것에 대해 상용한자, 현대 일본어 표기법 등을 올바르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4	정도	평이한 구술이나 초고 등에 속기를 활용할 수 있다.
	속도	분속 180글자를 기준으로 5분간 계속해 낭독한 것을 속기할 수 있다.
	번문	상기의 경우에 60분 이내에 문자로 번문할 수 있다.
	정확도	번문의 경우에 사전·참고서 등을 이용해 정확도 97%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평이한 내용의 것에 대해 교육한자, 현대 일본어 표기법 등을 올바르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5	정도	노트나 메모 등에 속기를 이용할 수 있다.
	속도	분속 120글자를 기준으로 5분간 계속해 낭독한 것을 속기할 수 있다.
	변문	상기의 경우에 60분 이내에 문자로 변문할 수 있다.
	정확도	변문의 경우에 사전·참고서 등을 이용해 정확도 96%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평이한 내용의 것에 대해 교육한자, 현대 일본어 표기법 등을 올바르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6	정도	보통문자보다 빠르게 쓸 수 있다.
	속도	분속 80글자를 기준으로 5분간 계속해 낭독한 것을 속기할 수 있다.
	변문	상기의 경우에 60분 이내에 문자로 변문할 수 있다.
	정확도	변문의 경우에 사전·참고서 등을 이용해 정확도 96%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지식	평이한 내용의 것에 대해 교육한자, 현대 일본어 표기법 등을 올바르게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채점 기준은 오자, 탈자, 여분의 글자, 판독 불명료한 글자, 동음 다른 자 등을 원칙으로 1자 1실점으로 한다. 합격여부는 시험일부터 약 1개월 후에 합격·불합격의 통지를 보내며, 합격자는 협회의 합격자 명부에 등록되고, 검정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에게는 문부과학대신상, 협회 최우수상, 협회 우수상, 협회 장려상 등이 주어진다.

제3절 교육훈련 현황

1. 2000년 이전의 교육훈련³⁾

가.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6·25전쟁으로 속기사 양성기관들이 전폐되다시피 한 까닭에 신인속기사의 발굴은 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속기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국비양성기관을 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속기를 이해해 주는 많은 국회의원과 유지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국회 내에 1951년 11월30일 문교부장관 인가를 얻어 12월1일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개설, 약 120명의 제1기생을 선발, 일과법식으로 국비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학습기간은 1년으로 하고 주로 속기학과 속기술을 교습케 하였으며, 일반교양 과목으로 국어·법률·경제·상식을 합하여 야간에 주 18시간을 수업하게 하였다.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의 설립으로 우리나라는 비로소 안정적 속기사 공급을 보장받은 셈이다. 1961년 5·16 혁명으로 폐쇄될 때까지 10회에 걸쳐 313명의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이 학교는 실제로 우리 속기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우수한 속기사를 많이 배출하였다.

나. 군부대 속기교육

육군에서는 육군고급부관학교에 속기반을 두어 지속적인 속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부관학교 속기반은 논산훈련소에서 특과분류를 할 때 판단력·순발력·기억력이 좋은 사병을 시험을 통하여 1개 반 50명씩을 선발하여 고려식을 36주간 교육했는데 5·16 이후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육군고급부관학교 속기반은 1기부터 20기까지 수많은 속기사를 양성하여 군의 수요에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속기사를 배출하였다. 또

3) 대한속기협회(1998), 「한국속기50년사」에서 발췌하였음.

한 1953년 7월 육군정보부대에서는 국내외 방송 특히 북한 방송을 청취, 기록하기 위하여 속기교육을 실시하였다.

다. 국회속기사양성소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이전의 속기교육기관이 폐지되면서 국회속기사의 신규충원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해 1968년 국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회속기사양성소설치규정이 통과되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국비로 운영하는 속기사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국회속기사양성소의 수업연한은 1년이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만 20세 이하의 남녀로서 소정의 입학시험(국어, 일반상식 등 교양과목과 논술)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였으나 1986년 이후에는 연령제한을 25세 이하로 완화하였다.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설립 이후 27년간 국회사무처 속기과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1994년 국회의정연수원이 출범하면서 국회속기사양성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995년부터 국회의정연수원 연수과 교육과정의 하나로 편제되었다. 1997년에는 속기록의 신속성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기존의 수필속기에서 일반키보드식 속기로 교육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패로 끝나고 1998년 학생모집을 중단함으로써 국회속기사양성소는 자동폐교 되었다.

2. 2000년 이후의 교육훈련

2000년 이전에는 속기사의 주요 수요처인 정부가 정규교육기관의 운영을 통해 속기사 양성에 일정 부분 참여했으나, 1998년 국회속기양성소의 폐교로 속기사 양성에 정부의 역할은 전혀 없으며 이와 동시에 정규교육기관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는 주로 컴퓨터속기가 활용되면서 속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설학원을 통해 속기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CAS속기교육기관은 오프라인(학원) 24개소, 온라인(원격교육기관) 2개소, 소리자바속기교육기관은 오프라인(학원) 1개소, 온라인(원격교육기관) 1개소가 활발히 교육중이

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는 6개월~1년 과정으로 하루 2시간, 주 4일 수업하는데 기초이론 2개월, 기초응용 2개월을 마치고 나면 계속 속도 연습을 하게 된다. 교육훈련내용은 <표 II-12>과 같이 속기를 하기 위한 이론 지식보다는 속기 연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12> 속기 교육훈련과정 사례

교육기간	내 용
1개월	속기키보드 기본자리 및 응용약어
2개월	보고 속기하기 및 속도연습
2개월	듣고 속기하기 급수별 속도연습
1개월	자격시험 대비

제4절 속기사 취업 실태⁴⁾

컴퓨터속기가 도입된 후와 전의 속기사 취업실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실시간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현재 속기사를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곳은 국회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법원,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법제화되어 KBS를 비롯한 공중파와 케이블방송이 실시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속기가 활용되는 분야는 취재속기·강의속기·좌담속기·비서속기·녹취속기·저술속기·설교속기·방송속기·군대속기·세미나속기·메모속기·생활속기 등을

4)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http://www.kcost.org>), 한국스마트속기협회(<http://www.casi.co.kr>)에서 발췌하였음.

좁을 수 있다. 이들 속기의 용도별 분류 중 국회속기·지방의회속기·법원속기·방송국의 자막방송속기·검찰속기 등은 전문속기에 속하고, 기타 속기는 비전문속기에 속한다. 여기서 전문속기는 2급 이상의 속기사들이 할 수 있으나 비전문속기는 3급 이하의 속기실력자라도 가능하다(대한속기협회, 1998).

속기사는 국회, 법원, 지방의회, 관공서,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일반기업체, 대사관, 외국인 상사 등에 근무하거나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방송자막속기가 1998년부터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컴퓨터 속기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속기사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며, 사설학원의 속기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1~2년 정도의 숙련기간이 필요하다. 속기사는 속기법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적용하며, 국어, 영어, 경제, 법률, 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요구되고, 맞춤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옮겨 적기 위한 기억력, 판단력, 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속기사가 활용하고 있는 분야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참조)

〈표 II-13〉 속기사 직업정보

구 분	내 용
하는 일	회의, 강연, 강의, 좌담회, 공판정 등에서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듣고 속기부호를 이용하여 받아쓰거나 타이핑하고, 이를 평상문자로 번역하여 기록/문서로 작성함
업무수행능력	청력, 듣고 이해하기, 기억력, 선택적 집중력, 읽고 이해하기
지식	국어, 사무, 법, 경영 및 행정 상담
일자리 전망	증가(42%), 현상유지(24%), 감소(3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지업정보시스템(<http://know.work.go.kr>)

① 국회

국회는 속기사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고 정부 수립 이후 모든 기록이 속기에 의해 생산 보존되고 있다. 전체 125명이 활동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

1990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260여 곳의 자치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 700여명의 속기사가 일반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③ 법원

법원 속기사는 1992년에 처음으로 시험 운용되었으며,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법원은 도입 당시부터 컴퓨터속기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전국의 지방법원과 지원, 고등법원 등에 채용되어 있는 속기사는 800여명이다. 2005년부터 사무원 직렬이 "속기사무원" 직렬로 변경되어 전국 70여개 법원 및 지원에서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재판부별로 속기사가 필요하므로 사무원 외에 별도로 전문계약직도 채용하고 있다.

④ 정부기관

청와대, 총리실 등 각 행정부처에 활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총 150여명의 속기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그 외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속기사가 필요하며, 각종 공사에서도 속기사를 채용하고 있다.

⑤ 검찰

검찰 속기사는 2009년 7급 상당으로 30여 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도입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현재 100여 명에 달한다. 속기사는 피의자를 신문할 때 영상녹화조사실에서 녹음/녹화를 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속기사는 조사가 끝난 후에 영상녹화 CD를 받아 녹취록을 작성하는 업

무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실시간으로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2012년부터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의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⑥ 일반회사

대기업체의 경우에 속기사를 채용하는 경우보다는 프리랜서나 속기사사무실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채용하는 경우도 많아, 대략 100여명 가량이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다. 주주총회 회의록이나 이사회회의록 등의 작성에 속기사를 투입하고 있다.

⑦ 속기사사무소

우리나라의 속기사사무소는 100여 곳이 있으며 프리랜서로서 제도권이 소화하지 못하는 각종 분야에서 근무하며 그 수는 4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⑧ 자막방송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5대 공중파 방송이 90%~100%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케이블방송은 2016년까지 70%~100%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속기사가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는 200여 명의 자막방송 속기사가 KBS를 비롯한 공중파와 20여 주요 케이블방송의 자막방송을 속기하고 있다. 위성방송, 각 지역 자체방송, 디지털방송 등 자막방송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보여 더 많은 컴퓨터속기사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⑨ 교육속기

청각장애인의 교육접근권 확보로 인하여 새로운 취업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복지대학교 특수교육원을 비롯한 일반 대학교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들은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강의를 속기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취업과 봉사를 겸한 속기사로서 향후 이 수요는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 II-14>로 정리하였다.

〈표 II-14〉 전국기관별 속기사 취업현황(2013년 기준)

취업처	취업자수	내용	비고
국 회	120여 명	컴퓨터속기사 80여명 수필속기사 40여명	'95년부터 컴퓨터속기사 채용 시작
법 원	800여 명	전국법원에서 증인신문시	'92년 2명부터 시작해서 전국법원 확대
검 찰	100여 명	영상녹화조사시 조서속기	인권보호와 신속한 사건처리
지방의회	700여 명	전국 220여곳에서	일반직 신설로 속기사 TO확대
자막방송	200여 명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로 공중파는 물론 케 이블 방송까지 확대	2015년까지 지역 방송도 확대 예정으로 자막방송 속기사는 300여명으로 확대 예상
교육속기사	100여 명	청각장애우의 교육접근권 확대	한국복지대, 특수교육원, 일반대학 교에서 채용, 점차 중고등학교로도 확대 예정
프리랜서	400여 명	전국속기사무소, 경찰청 원 스톱지원센터 등	주주총회, 재개발회의, 이사회, 각종 공청회와 녹취복수요 확대 등 속기분야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속기교육 (학원)	60여 명	오프라인 25곳, 온라인 3곳	
기타분야	200여 명	청와대 등 정부행정부처, 위원회, 공사 등	
계	2,680여 명		

제5절 시사점

속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국회, 지방의회에서 기업과 자막방송 등으로 그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한글속기 자격의 응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속기자격은 국가기술자격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속기자격은 속기 방법 즉, 속기기계 및 속기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격의 경우 속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속기 활용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자막, 조서속기 등 다양한 자격종목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속기자격은 공통적으로 출제분량 및 시험방법이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검정과목은 주로 연설체와 논설체로 구분되어 있고, 시험은 실시간검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채점은 글자의 정확도만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띄어쓰기, 문장력 등을 채점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의 속기기능검정의 경우 변문시간을 고려할 때 국내 자격보다 변문에 높은 비중을 두고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기방법 또는 수단이 시대에 따라 수필, 타자, 컴퓨터로 변화하였고, 그 활용 분야도 다양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2012년부터 검정방법을 변문단계를 생략한 실시간검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즉, 속기방법 또는 수단이 발달되어도 빠른 시간에 사람의 말을 기록하고 이를 정확하게 문자화하는 속기 본래의 목적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은 속기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추기보다 속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속기프로그램의 발달과 회의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검정단계에 대화체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한국속기 50년사』, (사)대한속기협회, 1998
- 이승철(1993). 「속기실무과정중 -준비단계에 대하여」, 『속기계』, 제30호, (사)대한속기협회.
-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http://www.kcost.org>
-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www.casi.co.kr>
- 『속기계』, 제1호~40호
- 『속기개관』, 국회사무처, 1969

이 글은 필자가 행한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과제(2014) “한글속기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개편방안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